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기관외장
람	

제1619호 2021. 9. 6(월)

차 례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56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중1-53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1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57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5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58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고시 8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59호 도시관리계획(마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
도면 고시 9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60호 도시관리계획(검암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
도면 고시 12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564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중2-939호선, 소로1-312호선)사업 실시
계획(변경) 열람·공고 57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577호 금곡동 중로2-226호선 도로개설공사 수용재결 신청서류
열람 공고 79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582호 공유재산 무단점유 원상회복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
송달 공고 80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585호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87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588호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93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21-156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1-53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도시계획시설 【도로명: 중로1-53호선, 사업명: 원창동 동일폐차장 부근 도로개설공사】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변경)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서구청(도시계획과, ☎032-560-4763)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1. 9. 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변경사유

- 지적 분할에 따른 편입 필지 반영(변경)

2.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 없음)

-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152-42번지 일원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없음)

- 종류: 도시계획시설(중로3-53호선)
- 명칭: 원창동 동일폐차장 부근 도로개설공사

4.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 없음)

- L=525m, B=20m, A=10,434.1m²

5.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 성명: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서구청)

6.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없음)

- 2008. 2. 18. ~ 2021. 12. 31.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 따로 붙임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사업명 : 원창동 동일폐차장 부근 도로개설공사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연번	구 분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지적	편입	성 명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	원창동	31-14	도	28	28	공	인천광역시				
2	-	"	31-11	도	94	94	공	인천광역시 서구				
3	-	"	31-15	도	152	152	국	국토교통부				
4	-	"	132-38	도	253	253	공	인천광역시				
5	-	"	132-29	도	10	10	공	인천광역시 서구				
6	-	"	132-23	도	12	12	공	인천광역시				
7	-	"	132-39	도	6	6	공	인천광역시 서구				
8	-	"	132-5	도	547	547	공	인천광역시 서구				
9	-	"	205-5	도	169	169	국	국토교통부				
10	-	"	129-19	도	50	50	공	인천광역시 서구				
11	-	"	129-22	전	12	12	공	인천광역시 서구				
12	-	"	129-21	도	23	23	공	인천광역시 서구				
13	-	"	129-20	전	7	7	공	인천광역시 서구				
14	-	"	131-6	도	6	6	공	인천광역시 서구				
15	-	"	132-40	전	465	465	공	인천광역시 서구				
16	당초	"	132-34	전	257	186	공	인천광역시 서구				
16	변경	"	132-42	전	186	186	공	인천광역시 서구				
17	-	"	131-7	대	538	538	공	인천광역시 서구				
18	-	"	130-11	전	367	367	공	인천광역시 서구				
19	-	"	130-13	전	104	104	공	인천광역시 서구				
20	-	"	154-2	도	684	684	공	인천광역시 서구				
21	-	"	155-10	대	370	370	공	인천광역시 서구				

연번	구 분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지적	편입	성 명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22	-	"	153-7	도	55	55	공	인천광역시 서구				
23	-	"	152-54	임	5	5	공	인천광역시 서구				
24	-	"	152-48	전	447	447	공	인천광역시 서구				
25	-	"	152-50	전	481	481	공	인천광역시 서구				
26	-	"	152-52	임	1,645	1,645	공	인천광역시 서구				
27	-	"	152-42	전	478	478	공	인천광역시 서구				
28	-	"	152-46	전	724	724	공	인천광역시 서구				
29	-	"	152-39	임	1	1	공	인천광역시 서구				
30	-	"	152-45	전	703	703	공	인천광역시 서구				
31	-	"	150-9	전	384	384	공	인천광역시 서구				
32	-	"	150-8	전	1	1	공	인천광역시 서구				
33	-	"	143-21	전	419	419	공	인천광역시 서구				
34	-	"	144-2	전	23	23	공	인천광역시 서구				
35	-	"	408-9	전	985.1	985.1	공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21-157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9. 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폐지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 527 외 9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변경·폐지)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 유
		별 도 열 략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1.9.6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 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 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2021-9-6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황길동 204-60, 204-7, 20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 527 (황길동)	20081231	으뜸이 되는 담이라는 뜻의 옛 지명에서 유래	
2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322-55	인천광역시 서구 서달로 14-7 (석남동)	20090706	옛 간지촌 황산의 원 이름인 서달산의 이름을 인용하여 제명	
3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77-16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해내로162번길 24-8 (청라동)	20101111	도로의 기점이 결한 대로, 로의 기초번호로 도로명부여	
4	인천광역시 서구 굽곡동 507-19, 506-4	인천광역시 서구 풍릉대로 1575 (굽곡동)	20090706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으로 금산 싸움에서 7백 의병과 함께 전사한 조현선생의 호를 따서 제명	
5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804-3	인천광역시 서구 김단로768번길 54 (불로동)	20081231	김단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6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6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919-6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로178번길 54 (마전동)	20081231	원창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7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7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708-3	인천광역시 서구 봉화로85번길 4 (오류동)	20090922	봉화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8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8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212-107	인천광역시 서구 한서로 83 (백석동)	20171025	한울지구의 서쪽에 위치	
9	인천광역시 서구 황길동 196-5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 514-11 (황길동)	20081231	으뜸이 되는 담이라는 뜻의 옛 지명에서 유래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조서

고시일 : 2021-9-6

연번	도로명주소	폐지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1636-8 (금곡동)	건물말소	20090710	도로 구간 인근에 봉수대가 있었음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21-158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고시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9. 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 업 명 : 인천검단지구 AA-15BL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주체 : 인천검단1차피에프브이(주) (대표 노재영, 양미영)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 820, 304호(장기동)
3. 사업시행 및 면적규모
 -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검단신도시 AA15블록
 - 나. 대지면적 : 86,485㎡
 - 다. 사업규모 : 연면적 253,987.0943㎡ (지하 3층, 지상 25층)
 - 라.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15개동 1,42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1개동
 - 마. 사 업 비 : 716,567,697천원
4. 사업기간 : 2021. 9. 23. ~ 2024. 9. 22.
5.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따른 의제처리사항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21-159호

도시관리계획(마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마전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도시계획과, ☎ 032-560-6872)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1. 9. 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결정(변경)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마목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2. 위치

- 마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1157번지 등 16필지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마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일원	607,143.1	-	607,143.1	-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없음)

다.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없음)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분(변경없음)

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부분(변경)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

(1) 공동주택용지(B-2용도)(변경)

기 정					변 경						
도면 표시	가 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도면 표시	가 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치	면 적(㎡)					위치	면적(㎡)	
B-2	39	8,876.5	1-1	442.9		B-2	39	8,876.5	1	1,364.2	
			1-2	442.8							
			2	478.5							

(2) 공동주택용지(B-5용도)(변경)

기 정					변 경						
도면 표시	가 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도면 표시	가 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치	면 적(㎡)					위치	면적(㎡)	
B-5	55	5,579.4	10	485.2			55	5,579.4	10	1,002.3	
			11	517.1							
	56	3,032.8	3	260.0		B-5	56	3,032.8	3	624.1	
			4	255.5							
			5	255.5							
			6	255.5							
			7	253.2							
			10	289.6							
			11	285.5							
								10	575.1		

(3) 공동주택용지(B-6용도)(변경)

기 정						변 경					
도면 표시	가 구 번 호	면 적 (㎡)	획 지		비 고	도면 표시	가 구 번 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위 치	면 적(㎡)	
B-6	31	19,919.4	3	273.6		B-6	31	19,919.4	3	542.1	
			4	268.5					20	1,142.9	
			20	601.0							
			21-1	541.9							

■ 변경사유서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획지계획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용지(B-2) <ul style="list-style-type: none"> ·39-1-1, -1-2, -2 → 39-1 - 공동주택용지(B-5) <ul style="list-style-type: none"> ·55-10, -11 → 55-10 ·56-3, -4, -5, -6, -7 → 56-3, -4 ·56-10, -11 → 56-10 - 공동주택용지(B-6) <ul style="list-style-type: none"> ·31-3, -4 → 31-3 ·31-20, -21-1 → 31-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획지계획 변경을 통한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

-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 다) 건축물의 용도·형태·배치 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4. 지형도면: 변경 없음(계재 생략)

-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21-160호

도시관리계획(검암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검암1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도시계획과, ☎ 032-560-687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1. 9. 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결정(변경)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마목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2.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602-4, -5번지

3. 도시관리계획(검암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도 면 표시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고
-	검암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635번지 일원	660,490.3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없음)

가)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계	662,648.7 (2,158.4)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379,614.6	57.3	
제2종일반주거지역	168,044.4 (2,158.4)	25.4	()구역의 면적
제3종일반주거지역	114,989.7	17.4	

※ 변경후 662,648.7㎡는 구역에서 제외된 2,158.4㎡ 포함한 면적

다.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조서(변경 없음)

가) 교통시설(변경없음)

■ 도로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169	18-25	보조간선	1,507	검암동 산19 남측지구계	대로1-19 (검암동71-3)	일반 도로		인고 제130호 93.9.28.	
기정	중로	2	170	15-16	국지 도로	82	중로2-169	중로3-141	일반 도로	-	인고 제113호 00.6.30.	
기정	중로	2	184	18-25	보조 간선	517.25 (2,417.25)	검암동5-1 (서측지구계)	대로1-19	일반 도로	-	인고 제130호 93.9.28.	
기정	중로	3	72	12	집산 도로	194	소로3-4	소로1-3	일반 도로		인고 제130호 93.9.28.	
기정	중로	3	138	12	국지 도로	323	검암동 244-3	중로 2-169	일반 도로	-	인고 제130호 93.9.28.	
기정	중로	3	139	12	국지 도로	325	중로 2-169	중로 3-140	일반 도로	-	인고 제130호 93.9.28.	
기정	중로	3	140	12	국지 도로	21.25	대로 1-19	중로 3-139	일반 도로	-	인고 제130호 93.9.28.	
기정	중로	3	141	12	국지 도로	162	중로 2-170	중로 3-142	일반 도로	-	인고 제113호 00.6.30.	
기정	중로	3	142	12	특수 도로	22.25	대로 1-19	중로 3-141	보행자 도로		인고 제130호 93.9.28.	
기정	소로	1	1	10-16	국지 도로	1,061	중로 2-169	중로 2-169	일반 도로	-	인고 제130호 93.9.28.	
기정	소로	1	2	10	국지 도로	175	중로 3-72	소로 2-10	일반 도로	-	인고 제130호 93.9.28.	
기정	소로	1	3	10	국지 도로	282	소로 1-20	소로 2-111	일반 도로	-	인고 제130호 93.9.28.	
기정	소로	1	4	10	특수 도로	22.25	대로 1-19	소로 2-44	보행자 도로	-	인고 제130호 93.9.28.	
기정	소로	1	5	10-12	국지 도로	254	중로 2-184	중로 3-139	일반 도로	-	인고 제130호 93.9.28.	
기정	소로	1	11	10	국지 도로	32	중로 2-169	소로 2-5	일반 도로	-	인고 제130호 93.9.28.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13	10	국지 도로	34	중로 2-169	소로 2-16	일반 도로	-	인고 제130호 93.9.28.	
기정	소로	1	16	10	국지 도로	32	중로 2-169	소로 2-10	일반 도로	-	인고 제130호 93.9.28.	
기정	소로	1	17	8	국지 도로	36	중로 2-184	소로 2-64	일반 도로	-	인고 제130호 93.9.28.	
기정	소로	1	18	10	국지 도로	36	중로 2-184	소로 2-65	일반 도로	-	인고 제130호 93.9.28.	
기정	소로	1	20	10	국지 도로	22.25	대로 1-19	소로 1-3	일반 도로	-	인고 제130호 93.9.28.	
기정	소로	2	1	8	국지 도로	158	대로 1-19	소로 3-4	일반 도로	-	인고 제130호 93.9.28.	
기정	소로	2	5	8	국지 도로	209	중로 3-141	중로 2-170	일반 도로	-	인고 제130호 93.9.28.	
기정	소로	2	10	8	국지 도로	33	소로 1-2	소로 1-16	일반 도로	-	인고 제130호 93.9.28.	
기정	소로	2	12	8	국지 도로	133	소로 1-2	소로 3-4	일반 도로	-	인고 제130호 93.9.28.	
기정	소로	2	13	8	국지 도로	107	소로 1-2	소로 3-4	일반 도로	-	인고 제130호 93.9.28.	
기정	소로	2	14	8	국지 도로	216	소로 2-10	소로 3-4	일반 도로	-	인고 제130호 93.9.28.	
기정	소로	2	16	8	국지 도로	319	소로 1-1	소로 2-111	일반 도로	-	인고 제130호 93.9.28.	
기정	소로	2	17	8	국지 도로	158	소로 2-26	소로 2-23	일반 도로	-	인고 제113호 00.6.30.	
기정	소로	2	18	8	국지 도로	113	소로 1-3	소로 2-16	일반 도로	-	인고 제130호 93.9.28.	
기정	소로	2	19	8	국지 도로	130	소로 1-3	소로 2-16	일반 도로	-	인고 제130호 93.9.28.	
기정	소로	2	20	8	국지 도로	62	소로 2-18	소로 2-19	일반 도로	-	인고 제130호 93.9.28.	
기정	소로	2	21	8	국지 도로	166	중로 2-169	소로 1-3	일반 도로	-	인고 제130호 93.9.28.	
기정	소로	2	22	8	국지 도로	120	소로 1-3	소로 2-21	일반 도로	-	인고 제130호 93.9.28.	
기정	소로	2	23	8	국지 도로	220	중로 3-138	소로 1-3	일반 도로	-	인고 제130호 93.9.28.	
기정	소로	2	24	8	국지 도로	62	중로 3-138	검암4공원	일반 도로	-	인고 제130호 93.9.28.	
기정	소로	2	25	8	국지 도로	130	소로 2-23	소로 2-24	일반 도로	-	인고 제130호 93.9.28.	
기정	소로	2	26	8	국지 도로	32	소로 1-1	소로 2-17	일반 도로	-	인고 제130호 93.9.28.	
기정	소로	2	27	8	국지 도로	244	소로 1-3	소로 2-111	일반 도로	-	인고 제130호 93.9.28.	
기정	소로	2	28	8	국지 도로	93	소로 2-111	소로 2-27	일반 도로	-	인고 제130호 93.9.28.	
기정	소로	2	29	8	국지 도로	132	소로 2-28	소로 2-27	일반 도로	-	인고 제130호 93.9.28.	
기정	소로	2	30	8	국지 도로	34	소로 1-1	소로 2-27	일반 도로	-	인고 제130호 93.9.28.	
기정	소로	2	31	8	특수 도로	34	중로 2-169	소로 2-111	보행자 도로	-	인고 제130호 93.9.28.	
기정	소로	2	32	8	국지 도로	109	중로 2-169	소로 3-4	일반 도로	-	인고 제130호 93.9.28.	
기정	소로	2	36	8	특수 도로	109	중로 2-169	소로 3-4	보행자 도로	-	인고 제130호 93.9.28.	
기정	소로	2	37	8	국지 도로	79	소로 1-1	소로 2-111	일반 도로	-	인고 제130호 93.9.28.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38	8	특수 도로	34	중로 2-169	소로 2-111	보행자 도로	-	인고 제130호 93.9.28.	
기정	소로	2	39	8	국지 도로	98	소로 2-37	소로 2-109	일반 도로	-	인고 제130호 93.9.28.	
기정	소로	2	40	8	국지 도로	231	중로 3-138	소로 2-43	일반 도로	-	인고 제130호 93.9.28.	
기정	소로	2	41	8	국지 도로	191	중로 3-138	소로 2-40	일반 도로	-	인고 제130호 93.9.28.	
기정	소로	2	42	8	특수 도로	32	소로 1-1	소로 2-40	보행자 도로	-	인고 제130호 93.9.28.	
기정	소로	2	43	8	국지 도로	256	중로 3-139	소로 1-1	일반 도로	-	인고 제130호 93.9.28.	
기정	소로	2	44	8	국지 도로	615	중로 3-139	소로 2-45	일반 도로	-	인고 제130호 93.9.28.	
기정	소로	2	45	8	국지 도로	214	소로 1-1	소로 2-44	일반 도로	-	인고 제130호 93.9.28.	
기정	소로	2	46	8	국지 도로	225	중로 3-139	소로 2-44	일반 도로	-	인고 제130호 93.9.28.	
기정	소로	2	47	8	국지 도로	121	소로 2-45	소로 2-46	일반 도로	-	인고 제130호 93.9.28.	
기정	소로	2	48	8	국지 도로	130	소로 2-45	소로 2-46	일반 도로	-	인고 제130호 93.9.28.	
기정	소로	2	49	8	국지 도로	110	소로 1-5	소로 2-46	일반 도로	-	인고 제130호 93.9.28.	
기정	소로	2	50	8	국지 도로	32	중로 3-139	소로 2-43	일반 도로	-	인고 제130호 93.9.28.	
기정	소로	2	51	8	국지 도로	76	중로 2-169	소로 1-1	일반 도로	-	인고 제130호 93.9.28.	
기정	소로	2	52	8	국지 도로	115	중로 2-169	소로 3-4	일반 도로	-	인고 제130호 93.9.28.	
기정	소로	2	53	8	국지 도로	259	중로 2-184	소로 2-52	일반 도로	-	인고 제130호 93.9.28.	
기정	소로	2	54	8	국지 도로	231	중로 2-184	소로 2-53	일반 도로	-	인고 제130호 93.9.28.	
기정	소로	2	55	8	국지 도로	110	중로 2-169	소로 3-4	일반 도로	-	인고 제130호 93.9.28.	
기정	소로	2	56	8	국지 도로	206	중로 2-184	소로 2-60	일반 도로	-	인고 제130호 93.9.28.	
기정	소로	2	57	8	국지 도로	109	소로 2-56	소로 3-5	일반 도로	-	인고 제130호 93.9.28.	
기정	소로	2	58	8	국지 도로	113	소로 2-56	소로 3-5	일반 도로	-	인고 제130호 93.9.28.	
기정	소로	2	59	8	국지 도로	204	중로 2-169	연희동 73-1 남측지구계	일반 도로	-	인고 제130호 93.9.28.	
기정	소로	2	60	8	국지 도로	134	소로 2-59	소로 3-5	일반 도로	-	인고 제130호 93.9.28.	
기정	소로	2	61	8	국지 도로	79	소로 2-59	소로 3-5	일반 도로	-	인고 제130호 93.9.28.	
기정	소로	2	62	8	국지 도로	107	소로 1-1	소로 3-6	일반 도로	-	인고 제130호 93.9.28.	
기정	소로	2	63	8	국지 도로	106	소로 2-65	소로 2-62	일반 도로	-	인고 제130호 93.9.28.	
기정	소로	2	64	8	국지 도로	26	소로 1-17	소로 3-6	일반 도로	-	인고 제130호 93.9.28.	
기정	소로	2	65	8	국지 도로	242	소로 2-62	소로 2-64	일반 도로	-	인고 제130호 93.9.28.	
기정	소로	2	66	8	국지 도로	92	소로 2-65	소로 3-6	일반 도로	-	인고 제130호 93.9.28.	
기정	소로	2	67	8	국지 도로	30	중로 2-169	소로 2-56	일반 도로	-	인고 제130호 93.9.28.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109	8	국지 도로	68	소로 1-1	소로 2-111	일반 도로	-	인고 제130호 93.9.28.	
기정	소로	2	111	8	국지 도로	509	소로 1-3	소로 1-1	일반 도로	-	인고 제113호 00.6.30.	
기정	소로	3	3	6	국지 도로	110	중로 2-169	소로 3-4	일반 도로	-	인고 제130호 93.9.28.	
기정	소로	3	4	6	국지 도로	1,379	중로 2-184	소로 2-1	일반 도로	-	인고 제130호 93.9.28.	
기정	소로	3	5	6	국지 도로	305	중로 2-184	소로 2-59	일반 도로	-	인고 제130호 93.9.28.	
기정	소로	3	6	6	국지 도로	389.25	대로 1-19	중로 2-1	일반 도로	-	인고 제130호 93.9.28.	
기정	소로	3	7	6	특수 도로	26	소로 2-21	3호어린이 공원	보행자 도로	-	인고 제130호 93.9.28.	
기정	소로	3	8	6	특수 도로	22.25	대로 1-19	소로 2-22	보행자 도로	-	인고 제130호 93.9.28.	
기정	소로	3	12	6	특수 도로	22.25	대로 1-19	소로 2-23	보행자 도로	-	인고 제130호 93.9.28.	
기정	소로	3	14	6	특수 도로	36	중로 3-139	소로 2-111	보행자 도로	-	인고 제130호 93.9.28.	
기정	소로	3	15	6	특수 도로	34	중로 2-169	소로 2-46	보행자 도로	-	인고 제130호 93.9.28.	
기정	소로	3	16	6	국지 도로	86	소로 2-58	소로 2-60	일반 도로	-	인고 제130호 93.9.28.	
기정	소로	3	17	6	국지 도로	95	중로 2-170	소로 2-14	일반 도로	-	인고 제113호 00.6.30.	

■ 주차장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1	검암1주차장	노외주차장	검암동 산93-1	2,653.9	인고 제130호 93.9.28.	
기정	2	검암2주차장	노외주차장	경서동 1-27	2,795.9	인고 제130호 93.9.28.	

나) 공간시설(변경없음)

■ 공원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2	장모루 근린공원	근린공원	검암동 594-2	5,703.6	인고 제130호 93.9.28.	
기정	2	간재울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검암동 607-2	2,500.2	인고 제130호 93.9.28.	
기정	3	중동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검암동 613-5	3,973.8	인고 제130호 93.9.28.	
기정	4	검바위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검암동 619-5	2,040.0	인고 제130호 93.9.28.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5	과기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검암동 657-2	2,394.7	인고 제130호 93.9.28.	
기정	6	빈정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검암동 681	6,983.5	인고 제130호 93.9.28.	
	7	검암 소공원	소공원	검암동 636-6	640.5		

■ 녹지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1	검암1녹지	완충녹지	검암동595-1~666-4	972.8	인고 제130호 93.9.28.	

■ 공공공지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1	공공공지	오류동 1747-23일원	3,570.7	인고 제80호 99.6.17.	
기정	2	공공공지	검암동 615-4	144.9	인고 제188호 11.8.1.	
기정	3	공공공지	검암동 616-5	285.8	인고 제188호 11.8.1.	
기정	4	공공공지	검암동 617-5	126.4	인고 제188호 11.8.1.	
기정	5	공공공지	검암동 625-9	365.3	인고 제188호 11.8.1.	
기정	6	공공공지	검암동 665-1	204.3	인고 제188호 11.8.1.	
기정	7	공공공지	검암동 666-4	153.3	인고 제188호 11.8.1.	

다) 공공시설(변경없음)

■ 학교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1	초등학교	초등학교	검암동 629-3	11,048.7	인고 제130호 93.9.28.	
기정	2	중 학교	중학교	검암동 619-4	12,307.4	인고 제130호 93.9.28.	
기정	3	서인천 고등학교	고등학교	검암동 636-7	23,653.1		

■ 공공청사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1	공공청사	동사무소	검암동 331	1,050.1	인고 제130호 93.9.28.	
기정	2	공공청사	소방파출소	검암동 330	1,050.3	인고 제130호 93.9.28.	
기정	3	공공청사	우 체 국	경서동 1-1	679.8	인고 제130호 93.9.28.	
기정	4	공공청사	파 출 소	경서동 1-6	682.2	인고 제130호 93.9.28.	

■ 사회복지시설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1	사회복지시설	검암동 679-3	1,676.1	인고 제258호 05.1.3.	

라) 환경기초시설(변경없음)

■ 하수도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1	하수도	오수펌프장	검암동 594-1	411.5	인고 제113호 00.6.30.	

라.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 공동주택용지(A용도)(변경없음)

가구번호	가구면적 (㎡)	획 지		비 고
		위치	면 적(㎡)	
2	58,233.4	2	380.4	
		3	48,187.2	
		5	9,044.9	
34	12,517.3	1	12,517.3	
37	11,925.9	1	11,925.9	
56	11,746.4	1	11,746.4	

■ 근린생활시설용지(B용도)(변경없음)

가구번호	가구면적(㎡)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6	2,715.2	1	810.9	
		2	1,904.3	
7	5,255.3	1	1,460.7	
		2	467.6	
		3	696.2	
		4-1	288.0	
		4-2	288.0	
		4-3	288.1	
		4-4	288.0	
		5	302.2	
		6	370.9	
		7	805.6	
8	4,438.0	1	1,375.1	
		3-1-1	301.2	
		3-1-2	306.2	
		3-1-3	305.4	
		3-1-4	624.5	
		3-1-5	305.5	
		3-1-6	311.1	
		3-1-7	306.9	
		3-2	270.0	
		4	332.1	

가구번호	가구면적(㎡)	획 지		분할가능 획지수	비고
		위치	면 적(㎡)		
12	3,721.1	1	867.8	-	
		2	523.1	-	
		4	167.1	-	
		5	1,552.2	-	
		6	330.5	-	
		7	280.4	-	
21	5,547.4	1	156.3	-	
		2	235.2	-	
		3	464.0	-	
		4	668.0	-	
		5-1	991.9	-	
		5-2	2,040.0	-	
		5-3	992.0	-	
23	4,023.7	1	322.9	-	
		3	213.2	-	
		4	523.5	-	
		5	808.4	-	
		6	718.7	-	
		7	1,437.0	-	
24	3,189.3	1	394.2	-	
		2	1,082.4	-	
		3-1	396.1	-	
		3-2	430.0	-	
		3-3	886.6	-	

가구번호	가구면적 (㎡)	획 지		비 고
		위치	면 적(㎡)	
25	973.9	1	413.1	
		2	560.8	
26	1,654.2	1	121.4	
		2	746.5	
		3	786.3	
27	1,322.1	1	421.4	
		2	459.2	
		3	441.5	
40	3,554.9	1	1,371.9	
		2	2,183.0	
47	2,558.5	1-1	283.2	
		1-2	283.2	
		2	640.2	
		3	191.4	
		4-1	284.2	
		4-2	438.2	
		4-3	438.1	
50	1,422.8	1-1	237.5	
		1-2	237.5	
		1-3	237.5	
		1-4	236.8	
		2	473.5	
55	3,555.2	1	2,019.7	
		2	1,535.5	
58	4,745.5	1-1	1,322.4	
		1-2	1,078.8	
		2	1,630.2	
		3	714.1	

가구번호	가구면적 (㎡)	획 지		필 지		비고
		위치	면적(㎡)	위치	면적(㎡)	
66	458.9	1	96.3	-		
		2	362.6	-		
67	3,160.0	1	720.6	-		
		2	689.7	-		
		3	155.1	-		
		4-1	442.8	-		
		4-2	442.7	-		
		5	311.8	-		
		6	182.6	-		
		-	-	652-8	116.7	공동개발권장
		-	-	652-7	98.0	
		77	3,854.6	1	496.0	-
1-1	496.0			-		
1-2	894.4			-		
2	1,174.0			-		
3	794.2			-		
82	3,711.4	1	685.7	-		
		2	521.8	-		
		4	502.8	-		
		5	159.9	-		
		6	207.0	-		
		7	235.3	-		
		8	384.1	-		
		9	221.5	-		
		10	216.2	-		
		11	450.0	-		
		15	127.1	-		
85	1,260.1	1-1	667.5	-		
		1-2	592.6	-		

※67가구 652-8, 652-7은 필지계획

가구번호	가구면적 (㎡)	획 지		분할가능 획지수	비고
		위치	면 적(㎡)		
86	4,194.3	1-1	330.3	-	
		1-2	342.7	-	
		1-3	231.2	-	
		2	218.4	-	
		3	334.0	-	
		4	311.3	-	
		5	197.1	-	
		6-1	859.9	-	
		6-2	848.2	-	
		7	186.3	-	
		8	334.9	-	
91	3,585.2	1	694.1	-	
		2-1	352.8	-	
		2-2	399.7	-	
		3	600.9	-	
		4	124.6	-	
		5-1-1	378.1	-	
		5-2	816.1	-	
92	5,498.6	1	1,698.2	-	
		3-1	484.5	-	
		3-2	497.1	-	
		3-3	434.2	-	
		3-4	486.6	-	
		4	1,021.6	-	
		5	876.4	-	

가구번호	가구면적 (㎡)	획 지		비고
		위치	면 적(㎡)	
93	3,769.4	1-1	613.8	
		1-2	468.0	
		2	1,007.3	
		3	499.8	
		4	424.1	
		5	270.8	
		6	485.6	
94	4,165.7	1	294.1	
		2	423.4	
		4	831.6	
		5-2	363.1	
		5-4	342.5	
		6	262.5	
		7	202.7	
		8	246.9	
		9	438.3	
		11	150.8	
		12	183.7	
		13	426.1	
		100	3,743.7	1
2	482.5			
3	378.2			
4-1	350.4			
4-2-1	344.6			
4-2-2	319.6			
5	234.7			
6	189.9			
7	346.5			
8	614.7			

가구번호	가구면적 (㎡)	획 지		비고
		위치	면 적(㎡)	
101	2,526.9	1	1,187.7	
		2	707.9	
		3-1	631.3	
103	3,784.1	1-1	301.5	
		1-2	262.5	
		1-3	222.1	
		2	165.1	
		3	222.4	
		4	315.4	
		5-1	544.4	
		5-2	440.4	
		6	175.1	
		7	221.7	
		8	156.6	
		9	756.9	
106	5,585.6	1	195.0	
		2	469.3	
		3	209.1	
		4	1,326.7	
		5	245.3	
		7	168.3	
		8-1	376.7	
		8-2	365.2	
		9	315.6	
		10	325.5	
		11	118.8	
		12	237.5	
		13	159.0	
		14	245.1	
		15	443.5	
		16	385.0	

■ 단독주택용지(C-1용지)(변경)

기 정					변 경				
가 구 번 호	가구면적 (㎡)	획 지		비고	가 구 번 호	가구면적 (㎡)	획 지		비고
		위 치	면 적(㎡)				위 치	면 적(㎡)	
18	4,502.8	1	223.8		18	4,502.8	1	223.8	
		2-1-1	288.9				2-1-1	288.9	
		2-1-2	350.2				2-1-2	350.2	
		2-2	398.6				2-2	398.6	
		2-3	523.5				2-3	523.5	
		3	746.1				3	746.1	
		4-1	200.5				4-1	595.5	
		4-2	893.0				4-2-1	298.0	
		4-3	248.0				4-2-2	200.0	
		4-4	248.0				4-3	248.0	
		4-4	248.0				4-4	248.0	
19	2,987.7	1-1	405.1		19	2,987.7	1-1	405.1	
		1-2	380.9				1-2	380.9	
		1-3	293.0				1-3	293.0	
		2	195.6				2	195.6	
		6	156.7				6	156.7	
		7	190.7				7	190.7	
		8	146.0				8	146.0	
		9	144.9				9	144.9	
		10	495.3				10	495.3	
		20	3,359.9	1-2			644.7		20
2-2	206.7				2-2	206.7			
3-2	269.7				3-2	269.7			
5	160.1				5	160.1			

기 정				변 경					
가 구 번 호	가구면적 (㎡)	획 지		비 고	가 구 번 호	가구면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위 치	면 적(㎡)	
25	5,566.6	3-1	729.8		25	5,566.6	3-1	729.8	
		3-2	729.8				3-2	729.8	
		5-2	532.2				5-2	532.2	
		6-2	524.9				6-2	524.9	
26	1,731.9	5-1	231.0		26	1,731.9	5-1	231.0	
		5-2	231.0				5-2	231.0	
		6	244.9				6	244.9	
		7-1	702.0				7-1	702.0	
		7-2	323.0				7-2	323.0	
28	2,918.6	1	322.0		28	2,918.6	1	322.0	
		2	423.4				2	423.4	
		3-1	633.4				3-1	633.4	
		3-2	274.7				3-2	274.7	
		5-1	835.3				5-1	835.3	
		5-3	429.8				5-3	429.8	
29	3,590.7	1-7	208.0		29	3,590.7	1-7	208.0	
		1-8	416.0				1-8	416.0	
		1-10	208.0				1-10	208.0	
		1-11	208.0				1-11	208.0	
		1-12	441.5				1-12	441.5	
30	4,675.1	1-1	380.1		30	4,675.1	1-1	380.1	
		1-2	465.0				1-2	465.0	
		1-3	384.0				1-3	384.0	
		2	484.3				2	484.3	
		3	393.4				3	393.4	
		4	295.4				4	295.4	
		5	465.1				5	465.1	
		6-1	274.0				6-1	274.0	
		6-2	274.7				6-2	274.7	
		6-3	304.8				6-3	304.8	
		6-4	338.6				6-4	338.6	
		7-1	307.9				7-1	307.9	
		7-2	307.8				7-2	307.8	

기 정				변 경					
가 구 번 호	가구면적 (㎡)	획 지		비 고	가 구 번 호	가구면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위 치	면 적(㎡)	
31	2,931.8	1	396.3		31	2,931.8	1	396.3	
		2-1	380.4				2-1	380.4	
		2-2	397.1				2-2	397.1	
		5	229.0				5	229.0	
41	3,268.4	1-3	241.4		41	3,268.4	1-3	241.4	
		1-4	238.4				1-4	238.4	
		2-1-5	233.4				2-1-5	233.4	
		3-2	264.6				3-2	264.6	
42	4,197.7	1	2,707.0		42	4,197.7	1	2,707.0	
		2	1,490.7				2	1,490.7	
43	5,218.1	1	293.3		43	5,218.1	1	293.3	
		2	213.1				2	213.1	
		4	253.4				4	253.4	
		5	720.2				5	720.2	
		6	383.6				6	383.6	
		8	389.3				8	389.3	
		9	649.5				9	649.5	
		10-1-1	642.2				10-1-1	642.2	
		10-1-2	349.5				10-1-2	349.5	
		10-2-1	376.8				10-2-1	376.8	
		10-2-2	551.9				10-2-2	551.9	
		10-2-3	395.3				10-2-3	395.3	
44	4,200.6	14	127.4		44	4,200.6	14	127.4	
		15	195.7				15	195.7	
		16	161.0				16	161.0	
		17	214.3				17	214.3	
		18	145.7				18	145.7	
		19	358.3				19	358.3	

기 정				변 경					
가 구 번 호	가구면적 (㎡)	획 지		비 고	가 구 번 호	가구면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위 치	면 적(㎡)	
45	5,997.3	4	111.1		45	5,997.3	4	111.1	
		5	345.7				5	345.7	
		6	364.5				6	364.5	
		7	399.3				7	399.3	
		9-2	367.9				9-2	367.9	
		12	135.9				12	135.9	
		13	154.6				13	154.6	
		14	94.4				14	94.4	
		15-2	215.8				15-2	215.8	
46	1,451.9	1-1	674.2		46	1,451.9	1-1	674.2	
		1-2-2	288.6				1-2-2	288.6	
		2	200.0				2	200.0	
		3	289.1				3	289.1	
53	2,403.1	2	201.3		53	2,403.1	2	201.3	
		3	403.8				3	403.8	
		4-2	310.2				4-2	310.2	
54	4,957.0	1	243.2		54	4,957.0	1	243.2	
		3-1	431.7				3-1	431.7	
		5-3	294.3				5-3	294.3	
59	2,761.5	2-4	357.0		59	2,761.5	2-4	357.0	
		2-5	357.1				2-5	357.1	
		3	260.0				3	260.0	
60	3,110.9	1-1-1	251.1		60	3,110.9	1-1-1	251.1	
		1-1-2	251.1				1-1-2	251.1	
		1-1-3	448.0				1-1-3	448.0	
		1-1-4	448.0				1-1-4	448.0	
		1-2-1	334.2				1-2-1	334.2	
		1-2-2	334.2				1-2-2	334.2	
		2	327.4				2	327.4	
		3	201.8				3	201.8	
		4	192.6				4	192.6	
		5	322.5				5	322.5	

기 정				변 경					
가 구 번 호	가구면적 (㎡)	획 지		비 고	가 구 번 호	가구면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위 치	면 적(㎡)	
61	3,309.7	1-1-1	283.7		61	3,309.7	1-1-1	283.7	
		1-1-2	283.5				1-1-2	283.5	
		4-1	488.9				4-1	488.9	
		5	264.3				5	264.3	
62	5,726.7	2-2	396.6		62	5,726.7	2-2	396.6	
		3-1	1,822.7				3-1	1,822.7	
		3-2	330.0				3-2	330.0	
		3-3	330.0				3-3	330.0	
		3-4	330.0				3-4	330.0	
		3-6	439.3				3-6	439.3	
63	4,948.0	2	411.1		63	4,948.0	2	411.1	
		4	379.9				4	379.9	
		5-7	374.5				5-7	374.5	
64-1	1,523.8	1	90.1		64-1	1,523.8	1	90.1	
		2	385.9				2	385.9	
		3	407.3				3	407.3	
64-2	2,302.1	1	870.6		64-2	2,302.1	1	870.6	
		2-1	478.6				2-1	478.6	
		2-2	952.9				2-2	952.9	
64-3	1,654.6	1-1	243.0		64-3	1,654.6	1-1	243.0	
		1-2	684.3				1-2	684.3	
		1-3	727.3				1-3	727.3	
65	3,887.7	1-1	406.4		65	3,887.7	1-1	406.4	
		2-2	721.5				2-2	721.5	
		2-3	395.2				2-3	395.2	
68	3,114.9	1-1	447.6		68	3,114.9	1-1	447.6	
		1-2	446.4				1-2	446.4	
		2-1	279.6				2-1	279.6	
		2-2	279.5				2-2	279.5	
		3	420.8				3	420.8	
		4	259.2				4	259.2	
		5	484.9				5	484.9	
		9	496.9				9	496.9	

기 정				변 경					
가 구 번 호	가구면적 (㎡)	획 지		비 고	가 구 번 호	가구면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위 치	면 적(㎡)	
69	3,740.6	1-1	395.3		69	3,740.6	1-1	395.3	
		1-2	231.6				1-2	231.6	
		2-1	438.3				2-1	438.3	
		2-2	438.4				2-2	438.4	
		3-1	292.7				3-1	292.7	
		3-2	284.5				3-2	284.5	
		3-3	577.3				3-3	577.3	
		4	210.0				4	210.0	
		5	174.1				5	174.1	
		6	117.8				6	117.8	
		7	255.7				7	255.7	
		8	170.5				8	170.5	
9	154.4	9	154.4						
70	3,9991.0	1-4	281.0		70	3,9991.0	1-4	281.0	
		1-5	259.6				1-5	259.6	
		1-6	259.3				1-6	259.3	
		4-1	237.8				4-1	237.8	
71	3,684.9	3	777.2		71	3,684.9	3	777.2	
		4	267.8				4	267.8	
		5-2	372.1				5-2	372.1	
72	3,683.0	3	144.3		72	3,683.0	3	144.3	
		4	487.1				4	487.1	
73	3,485.4	3	331.8		73	3,485.4	3	331.8	
		4-1	383.0				4-1	383.0	
		5	227.9				5	227.9	
		6-1	255.4				6-1	255.4	
		6-2	217.5				6-2	217.5	
74	2,650.1	2	297.5		74	2,650.1	2	297.5	
		3	378.1				3	378.1	
		4-2	631.6				4-2	631.6	
75	2,118.7	2	147.7		75	2,118.7	2	147.7	

기 정				변 경					
가 구 번 호	가구면적 (㎡)	획 지		비 고	가 구 번 호	가구면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위 치	면 적(㎡)	
76	4,707.2	1	760.4		76	4,707.2	1	760.4	
		2-1	1,169.3				2-1	1,169.3	
		2-2	1,169.4				2-2	1,169.4	
		3	347.4				3	347.4	
		4	93.5				4	93.5	
78	5,359.8	1-1-1	687.2		78	5,359.8	1-1-1	687.2	
		1-1-2	343.9				1-1-2	343.9	
		1-2-1-1	1,052.7				1-2-1-1	1,052.7	
		1-2-1-2	340.4				1-2-1-2	340.4	
		1-2-2	348.2				1-2-2	348.2	
		2-1	885.2				2-1	885.2	
		2-2	884.6				2-2	884.6	
79	4,938.6	1	665.8		79	4,938.6	1	665.8	
		2	628.0				2	628.0	
		3-1	985.0				3-1	985.0	
		3-2	331.8				3-2	331.8	
		4-1	469.6				4-1	469.6	
		4-2	466.2				4-2	466.2	
		5	1,392.2				5	1,392.2	
80	1,576.7	1	462.8		80	1,576.7	1	462.8	
		2	454.1				2	454.1	
		3	659.8				3	659.8	
81	5,358.2	1	677.9		81	5,358.2	1	677.9	
		9	498.7				9	498.7	
		10	396.4				10	396.4	
		11	415.0				11	415.0	
		12	260.5				12	260.5	
83	5,268.2	6-5	362.0		83	5,268.2	6-5	362.0	
		6-6	362.0				6-6	362.0	
		6-7	362.0				6-7	362.0	
		7	217.7				7	217.7	
		8	467.1				8	467.1	
		9	588.7				9	588.7	

기 정					변 경				
가 구 번 호	가구면적 (㎡)	획 지		비 고	가 구 번 호	가구면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위 치	면 적(㎡)	
87	4,231.6	1-1	349.5		87	4,231.6	1-1	349.5	
		1-2	349.5				1-2	349.5	
		2	289.9				2	289.9	
		3-1	590.6				3-1	590.6	
		3-3	295.3				3-3	295.3	
		5	166.4				5	166.4	
		6	205.4				6	205.4	
		7	221.9				7	221.9	
		8	247.7				8	247.7	
		9	123.1				9	123.1	
		10	231.8				10	231.8	
		11	236.3				11	236.3	
		14	96.7				14	96.7	
88	7,913.4	1-1	739.8		88	7,913.4	1-1	739.8	
		1-2	412.0				1-2	412.0	
		1-3	427.6				1-3	427.6	
		1-4	435.8				1-4	435.8	
		1-5	492.9				1-5	492.9	
		1-6	499.7				1-6	499.7	
		1-9	498.8				1-9	498.8	
		1-10	484.2				1-10	484.2	
		1-11	421.3				1-11	421.3	
		1-12	409.1				1-12	409.1	
		1-13	399.3				1-13	399.3	
		1-14	734.5				1-14	734.5	
		89	3,816.7	3			228.3		89

기 정				변 경					
가 구 번 호	가구면적 (㎡)	획 지		비고	가 구 번 호	가구면적 (㎡)	획 지		비고
		위 치	면 적(㎡)				위 치	면 적(㎡)	
90	2,452.2	1-1	528.6		90	2,452.2	1-1	528.6	
		1-2	518.8				1-2	518.8	
		1-3	518.8				1-3	518.8	
		2-1	428.0				2-1	428.0	
		2-2	458.0				2-2	458.0	
95	5,973.0	2	319.2		95	5,973.0	2	319.2	
		3	259.2				3	259.2	
		5-2	373.6				5-2	373.6	
		5-3	373.7				5-3	373.7	
		6-2	330.6				6-2	330.6	
		6-3	330.6				6-3	330.6	
		6-4	483.7				6-4	483.7	
		7	145.6				7	145.6	
		8	190.5				8	190.5	
96	1,241.6	2	325.6		96	1,241.6	2	325.6	
		3	134.6				3	134.6	
		5	217.1				5	217.1	
		6	459.7				6	459.7	
97	2,041.9	4	274.5		97	2,041.9	4	274.5	
		5	202.5				5	202.5	
98	2,175.6	1-1	256.2		98	2,175.6	1-1	256.2	
		1-2	577.5				1-2	577.5	
		2	558.1				2	558.1	
		6	279.2				6	279.2	
99	4,931.3	1-2	660.0		99	4,931.3	1-2	660.0	
		2-1-1	386.3				2-1-1	386.3	
		2-1-2	410.0				2-1-2	410.0	
		2-2-1	396.8				2-2-1	396.8	
		2-2-2	429.8				2-2-2	429.8	
		3	651.2				3	651.2	
		4	425.4				4	425.4	
		5	500.1				5	500.1	
		6	593.7				6	593.7	

기 정				변 경					
가 구 번 호	가구면적 (㎡)	획 지		비 고	가 구 번 호	가구면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위 치	면 적(㎡)	
102	1,690.2	1	614.2		102	1,690.2	1	614.2	
		2-1	352.0				2-1	352.0	
		2-2	390.0				2-2	390.0	
		2-3	334.0				2-3	334.0	
104	4,042.8	1-1	570.0		104	4,042.8	1-1	570.0	
		1-2-1	461.2				1-2-1	461.2	
		1-2-2	297.5				1-2-2	297.5	
		2-1	484.8				2-1	484.8	
		2-2	653.9				2-2	653.9	
		3	141.8				3	141.8	
		4	315.9				4	315.9	
		5	400.8				5	400.8	
		6	372.0				6	372.0	
		7	344.9				7	344.9	
105	3,371.3	1-1	678.0		105	3,371.3	1-1	678.0	
		1-2	623.9				1-2	623.9	
		1-3	386.0				1-3	386.0	
		2-1	415.1				2-1	415.1	
		2-2	501.4				2-2	501.4	
		3	327.7				3	327.7	
		4	439.2				4	439.2	
107	9,486.6	1-4	713.2		107	9,486.6	1-4	713.2	
		1-5	716.0				1-5	716.0	
		2-1	727.0				2-1	727.0	
		2-2	780.9				2-2	780.9	
		3	575.3				3	575.3	
		4	413.5				4	413.5	
		5	191.0				5	191.0	
110	2,683.5	1	577.5		110	2,683.5	1	577.5	
		2	1,017.9				2	1,017.9	
		3	387.7				3	387.7	
		4	483.9				4	483.9	
		5	216.5				5	216.5	

기 정				변 경					
가 구 번 호	가구면적 (㎡)	획 지		비 고	가 구 번 호	가구면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위 치	면 적(㎡)	
111	4,136.7	1-1	273.7		111	4,136.7	1-1	273.7	
		1-2	346.0				1-2	346.0	
		1-3	346.0				1-3	346.0	
		1-4	346.0				1-4	346.0	
		1-5	1,655.0				1-5	1,655.0	
		1-6	346.0				1-6	346.0	
		1-7	346.0				1-7	346.0	
		1-8	336.9				1-8	336.9	
		2	141.1				2	141.1	
112	2,962.6	1	360.7		112	2,962.6	1	360.7	
		2	1,900.1				2	1,900.1	
		3	701.8				3	701.8	

■ 변경 사유서

가구번호	위 치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서
18	4-1, 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획지분할 - 4-1, 4-2 → 4-1, 4-2-1, 4-2-2 - 2개획지 → 3개획지 	◦ 적정규모 획지분할을 통한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

■ 단독주택용지(C2용지)(변경없음)

가구번호	가구면적 (㎡)	획 지		비 고
		위치	면 적(㎡)	
18	4,502.8	5	382.2	
19	2,987.7	3	579.5	
20	3,359.9	1-1	227.4	
		1-3	276.2	
		1-4	276.7	
		2-1	421.7	
		3-1	570.7	
		4-1	490.4	
		4-2	289.0	
25	5,566.6	4-1	744.0	
		4-2	279.1	
		4-3	372.1	
		5-1	532.2	
		6-1	524.9	
		7	327.4	
		9	284.7	
28	2,918.6	4	274.7	
		5-2	429.8	
29	3,590.7	1-1	441.8	
		1-2	208.0	
		1-3	208.0	
		1-4	208.0	
		1-5	208.0	
		1-6	208.0	
		2	333.6	
		3	293.8	

가구번호	가구면적 (㎡)	획 지		비 고
		위치	면 적(㎡)	
31	2,931.8	3	1,122.7	
		4	406.3	
41	3,268.4	1-1	238.3	
		1-2	241.4	
		2-1-1	449.9	
		2-1-2	432.0	
		2-1-3	449.9	
		2-1-4	233.5	
		3-1	245.6	
44	4,200.6	1	312.6	
		2	312.6	
		4	127.8	
		5	385.2	
		6	380.8	
		8	167.9	
		9	219.2	
		10	317.5	
		11	346.8	
		13	427.8	
45	5,997.3	1-1	333.9	
		1-2	230.5	
		1-3	282.0	
		1-4	282.3	
		2	572.8	
		3-1	243.5	
		3-2	297.4	
		8	237.1	
		9-1	458.6	
		10	323.0	
		11	233.2	
		15-1	313.8	

가구번호	가구면적 (㎡)	획 지		비 고
		위치	면 적(㎡)	
51	4,934.5	2-8	422.3	
		2-9	264.7	
		2-10	264.7	
		2-11	264.7	
		2-12	264.7	
		2-13	264.7	
		2-14	264.7	
53	2,403.1	4-1	286.8	
		5	384.2	
		6	266.3	
54	4,957.0	2	323.1	
		3-2	292.9	
		5-1	552.3	
		5-2	310.3	
59	2,761.5	2-6	357.0	
61	3,309.7	1-2	597.9	
		2	730.0	
		3	206.1	
		4-2	455.3	
62	5,726.7	1-3	397.0	
		2-1	385.0	
		5	710.9	
		7-1	636	
		7-2	635	
70	3,991.0	1-1	248.0	
		1-2	231.5	
		1-3	231.6	
		2	112.8	
		3-1	443.6	
		3-2	443.5	
		4-2	1,002.4	
		4-6	239.9	

가구번호	가구면적 (㎡)	획 지		비 고
		위치	면 적(㎡)	
71	3,684.9	5-1	372.5	
72	3,683.0	5	432.2	
73	3,485.4	1	105.9	
		2	96.9	
74	2,650.1	1	681.9	
		4-1	661.0	
76	4,707.2	2-3	1,167.2	
83	5,268.2	3-1	439.0	
		3-2	426.9	
		6-1	677.3	
		6-3	299.9	
		6-4	339.9	
95	5,973.0	1-1	235.0	
		1-2	235.5	
		4-1	363.9	
		4-2	363.9	
		5-1	373.6	
		5-4	373.6	
		6-1	338.2	
		6-5	380.1	
		9	260.4	
		10	107.1	
97	2,041.9	2-1	564.5	
		2-2	562.5	
		3	438.2	
98	2,175.6	3	181.0	
		5	229.1	
99	4,931.3	1-1	478.0	
107	9,486.6	1-2	435.3	
		1-3	439.6	

■ 단독주택용지(C3용지)(변경없음)

가구번호	가구면적 (㎡)	획 지		비고
		위치	면 적(㎡)	
33	3,018.8	1-1	673.0	
		1-2	627.0	
		3	1,718.8	
51	4,943.5	1-1	615.1	
		1-2	307.4	
		2-1	422.3	
		2-2	264.7	
		2-3	264.7	
		2-4	264.7	
		2-5	264.7	
		2-6	264.7	
		2-7	264.7	
53	2,403.1	4-3	282.3	
		4-4	268.2	
54	4,957.0	6-1	350.8	
		6-2	355.4	
		7	1,387.6	
59	2,761.5	1	359.6	
		2-1	356.9	
		2-2	356.9	
		2-3	357.0	
62	5,726.7	1-1	324.5	
		1-2	531.4	
63	4,948.0	1-1	410.9	
		1-2	711.6	
		3	136.0	
		5-1	206.0	
		5-2	206.0	
		5-3	206.0	
		5-4	462.2	
		5-5	462.2	
		5-6	462.1	
		6	519.5	

가구번호	가구면적 (㎡)	획 지		비고
		위치	면 적(㎡)	
65	3,887.7	1-2	426.1	
		2-1	721.5	
		3	370.4	
		4	162.0	
		5	168.0	
		6	516.6	
71	3,684.9	1-1	231.1	
		1-2	228.1	
		1-3	228.1	
		1-4	228.1	
		2	979.9	
72	3,683.0	1	1,032.0	
		2-1	531.2	
		2-2	1,056.2	
73	3,485.4	4-2	380.3	
		7	254.4	
		8	292.9	
		9	371.7	
		10	344.2	
		11	223.5	
75	2,118.7	1	785.3	
		3-1	583.1	
		3-2	602.6	
78	5,359.8	2-3	817.6	
81	5,358.2	2	1,023.4	
		3	866.9	
		4	366.0	
		5	355.0	
		7	303.3	
		8	195.1	

가구번호	가구면적 (㎡)	획 지		비 고
		위치	면 적(㎡)	
83	5,268.2	1	313.6	
		2	412.1	
87	4,231.6	3-4	294.0	
		4	260.6	
88	7,913.4	1-7	968.6	
		1-8	989.8	
89	3,816.7	1-1	502.9	
		1-2	493.0	
		1-3	493.0	
		1-4	493.0	
		1-5	493.0	
		1-6	398.0	
		4	186.0	
		5	529.5	
107	9,486.6	1-1	435.1	
		1-6	773.8	
		1-7	716.9	
		6	2,569.0	
108	3,101.1	1	3,101.1	

■ 종교집회장용지(F용지)(변경없음)

가구번호	가구면적 (㎡)	획 지		비 고
		위치	면 적(㎡)	
44	1,308.0	621-19	271.0	
		621-6	1,037.0	
68	511.5	653-4	511.5	
96	2,961.5	657-1	2,961.5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공동주택지 A용도	2(2~5),34,37,56	용도	허용용도 ○ 별표1의 A지정 및 권장용도
			불허용도 ○ 별표1의 A 불허용도
		건 폐 율	○ 20%이하
		용 적 률	○ 250%이하
		높 이	○ 19층이하
		형 태	○ 별표2의 A
		배 치	○ 별표3의 A
		색 채	○ 별표4의 A
		건 축 선	-
		근린생활시설용지 B용도	6(1~2), 7, 8, 12, 21, 23(1~7), 24, 25(1~2), 26(1~3), 27(1~3), 40, 47(1-1~4-3), 50(1-1~4), 55, 58, 66, 67(1~8), 77, 82, 85(1-1~1-2), 86, 91, 92, 93, 94, 100(1~8), 101(1~2,3-1), 103, 106
불허용도 ○ 별표1의 B 불허용도			
건 폐 율	○ 60%이하		
용 적 률	○ 250%이하		
높 이	○ 5층이하		
형 태	○ 별표2의 B		
배 치	○ 별표3의 B		
색 채	○ 별표4의 B		
건 축 선	-		

■ 기 정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단독주택용지 C1	18(1,2-1-1~2,2-2~3,3,4-1~4), 19(1-1~3,2,6~10), 20(1-2,2-2,3-2,5), 25(3-1~2,5-2,6-2), 26(5-1~2,6,7-1~2), 28(1,2,3-1~2,5-1~3),29(1-7~12), 30(1-1~3,2~5,6-1~4,7-1~2), 31(1,2-1~2,5),41(1-3~4,2-15,3-2), 42(1~2),43(1,2,4~9,10-1-1~2, 10-2-1~3),44(14~19), 45(4~7,9-2,12~14,15-2), 46(1-1,1-2-2,2,3),53(2,3,4-2), 54(1,3-1,4,5-3),59(2-4~5,3), 60(1-1-1~4,1-2-1~2,2~5), 61(1-1-1~2,4-1,5),62(2-2,3-1~6), 63(2,4,5-7),64-1(1~3), 64-2(1,2-1~2),64-3(1-1~3), 65(1-1,2-2~3), 68(1-1~2,2-1~2,3~5,9), 69(1-1~2,2-1~2,3-1~3,4-9), 70(1-4~6,4-1),72(3~4), 73(3,4-1,5,6-1~2),74(2,3,4-2), 75(2),76(1,2-1~2,3,4), 78(1-1-1~2,1-2-1-1~2,1-2-2, 2-1~2),79(1,2,3-1~2,4-1~2,5), 80(1~3),81(1,9~12),83(6-5~7,7-9), 87(1-1~2,2,3-1~3,5~14), 88(1-1~6,1-9~14),89(3), 90(1-1~3,2-1~2),95(2~3, 5-2~3,6-2~4,7~8),96(2~6), 97(4~5),98(1-1~2,2,6), 99(1-2,2-1-1~2,2-2-1~2,3~6), 102(1,2-1~3), 104(1-1,1-2-1~2,2-1~2,3~7), 105(1-1~3,2-1~2,3~4), 107(1-4~5,2-1~2,3~5), 110(1~5),111(1-1~8,2),112(1~3)	용도	허용용도 ○ 별표1의 C1 지정 및 권장용도 불허용도 ○ 별표1의 C1 불허용도
		건 폐 율	○ 60%이하
		용 적 륜	○ 200%이하
		높 이	○ 4층이하 (지상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층수산정에서 제외.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의 완화규정 적용)
		형 태	○ 별표2의 C1
		배 치	○ 별표3의 C1
		색 채	○ 별표4의 C1
		건 축 선	-

■ 변경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단독주택 용지 C1	18(1,2-1-1~2,2-2~3,3,4-1,4-2-1~2,4-3~4), 19(1-1~3,2,6~10), 20(1-2,2-2,3-2,5), 25(3-1~2,5-2,6-2), 26(5-1~2,6,7-1~2), 28(1,2,3-1~2,5-1~3), 29(1-7~12), 30(1-1-3,2~5,6-1~4,7-1~2), 31(1,2-1~2,5), 41(1-3~4,2-15,3-2), 42(1~2), 43(1,2,4~9,10-1-1~2, 10-2-1~3), 44(14~19), 45(4~7,9-2,12~14,15-2), 46(1-1,1-2-2,2,3), 53(2,3,4-2), 54(1,3-1,4,5-3), 59(2-4~5,3), 60(1-1-1~4,1-2-1~2,2~5), 61(1-1-1~2,4-1,5), 62(2-2,3-1~6), 63(2,4,5-7), 64-1(1-3), 64-2(1,2-1~2), 64-3(1-1~3), 65(1-1,2-2~3), 68(1-1~2,2-1~2,3~5,9), 69(1-1-2,2-1~2,3-1~3,4~9), 70(1-4~6,4-1), 72(3~4), 73(3,4-1,5,6-1~2), 74(2,3,4-2), 75(2), 76(1,2-1~2,3,4), 78(1-1-1~2,1-2-1-1~2,1-2-2, 2-1~2), 79(1,2,3-1-2,4-1~2,5), 80(1~3), 81(1,9~12), 83(6-5~7,7~9), 87(1-1~2,2,3-1~3,5~14), 88(1-1~6,1-9~14),89(3), 90(1-1~3,2-1~2),95(2~3, 5-2~3,6-2~4,7~8),96(2-6), 97(4~5),98(1-1~2,2,6), 99(1-2,2-1-1~2,2-2-1~2,3~6), 102(1,2-1~3), 104(1-1,1-2-1~2,2-1~2,3~7), 105(1-1~3,2-1~2,3~4), 107(1-4~5,2-1~2,3~5), 110(1~5), 111(1-1~8,2),112(1~3)	용도	허용용도 불허용도	○ 별표1의 C1 지정 및 권장용도 ○ 별표1의 C1 불허용도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륜		○ 200% 이하
		높 이		○ 4층 이하 (지상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층수산정에서 제외.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의 완화규정 적용)
		형 태		○ 별표2의 C1
		배 치		○ 별표3의 C1
		색 채		○ 별표4의 C1
		건 축 선		-

■ 변경 사유서

변경내용	변경사유
○ 위치(가구번호) 변경 - 18번 가구 4-2번 획지 분할	○ 기존 단독주택용지(C1)내 획지분할에 따른 위치(가구번호) 변경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단독주택용지 C2용도	18(5),19(3), 20(1-1,1-3-4,2-1,3-1,4-1~2), 25(4-1~3,5-1,6-1,7~9), 28(4,5-2),29(1-1~6,2,3), 31(3,4), 41(1-1~2,2-1-1~4,3-1), 44(1-6,8~13), 45(1-1~4,2,3-1~2,8,9-1, 10,11,15-1),51(2-8~14), 53(4-1,5,6), 54(2,3-2,5-1~2), 59(2-6),61(1-2,2,3,4-2), 62(1-3,2-1,5,7-1~2), 70(1-1~3,2,3-1~2,4-2,4-6), 71(5-1),72(5),73(1,2), 74(1,4-1),76(2-3), 83(3-1~2,6-1,6-3~4), 95(1-1~2,4-1~2,5-1,5-4, 6-1,6-5,9,10), 97(2-1~2,3),98(3,5), 99(1-1),107(1-2,1-3)	용도	허용용도	○ 별표1의 C2지정 및 권장용도
			불허용도	○ 별표1의 C2 불허용도
		건 폐 율	○ 60%이하	
		용 적 륜	○ 200%이하	
		높 이	○ 4층이하 (지상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층수산정에서 제외한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의 완화규정 적용)	
		형 태	○ 별표2의 C2	
		배 치	○ 별표3의 C2	
		색 채	○ 별표4의 C2	
		건 축 선	-	
		단독주택용지 C3용도	33(1-1~2,3), 51(1-1~2,2-1~7), 53(4-3~4),54(6-1~2,7), 59(1,2-1~3),62(1-1~2), 63(1-1~2,3,5-1~6,6), 65(1-2,2-1,3~6), 71(1-1~4,2),72(1,2-1~2), 73(4-2,7~11),75(1,3-1~2), 78(2-3),81(2~8), 83(1,2),87(3-4,4), 88(1-7~8),89(1-1~6,4,5), 107(1-1,1-6~7,6),108(1)	용도
불허용도	○ 별표1의 C3 불허용도			
건 폐 율	○ 60%이하			
용 적 륜	○ 200%이하			
높 이	○ 4층이하 (지상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층수산정에서 제외한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의 완화규정 적용)			
형 태	○ 별표2의 C3			
배 치	○ 별표3의 C3			
색 채	○ 별표4의 C3			
건 축 선	-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교육시설용지D용도	46(4),57,64	용 도	○ 학교
		건 폐 율	○ 30%이하
		용 적 륜	○ 150%이하
		높 이	○ 5층이하
		형 태	-
		배 치	-
		색 채	-
		건 축 선	-
공공청사용지E용도	23(8,9),85(2,3)	용 도	○ 공공청사
		건 폐 율	○ 50%이하
		용 적 륜	○ 200%이하
		높 이	○ 4층이하
		형 태	-
		배 치	-
		색 채	-
		건 축 선	-
종교용지F용도	44(7,20),68(10),96(7)	용 도	○ 종교집회장
		건 폐 율	○ 50%이하
		용 적 륜	○ 200%이하
		높 이	○ 4층이하
		형 태	-
		배 치	-
		색 채	-
		건 축 선	-
사회복지시설용지G용도	90(3)	용 도	○ 사회복지시설
		건 폐 율	○ 50%이하
		용 적 륜	○ 200%이하
		높 이	○ 4층이하
		형 태	-
		배 치	-
		색 채	-
		건 축 선	-

마. 건축물의 대한 용도·형태·배치 등에 관한 계획 : (별표참조)

【별표1】 건축물 용도 분류표(변경없음)

【별표2】 건축물의 형태 분류표(변경없음)

【별표3】 건축물의 배치 분류표(변경없음)

【별표4】 건축물의 색채 분류표(변경없음)

【별표5】 차량동선, 주차시설, 단지내 시설물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별표6】 도시계획도로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별표7】 옥외광고물 설치기준(변경없음)

【별표8】 기타사항(변경없음)

【별표1】 건축물 용도분류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변경없음)

구분	A	B	C1	C2	C3	D ~ G
지정 용도	○공동주택 중 아파트	-	-	-	-	○ 학교(D) ○ 공공청사(E) ○ 종교집회장(F) ○ 사회복지시설(G)
권장 용도	-	○ 단독주택 ○ 공동주택 (아파트 제외)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골프연습장 제외) ○ 종교시설 중 종교집 회장 (타종 및 확장장치 없는 것에 한함) ○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노인 복지시설, 사회복지 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석유 및 액화가스판매소 ○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장, 세차장	○ 단독주택 (다중주택제외) ○ 공동주택 (아파트 제외) ○ 제1종근린생활시설 (단, 1층에 한함) ○ 제2종근린생활시설 - 제과점(제1종근린 생 활시설에 해당 되지 않은 것) - 서점(제1종근린생활 시설에 해당되지 않 은 것) - 사진관,표구점,학원, 독서실 - 부동산중개업소 - 일반음식점 (단, 1층에 한함) - 종교집회장 ○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 시설에 해 당하는 것을 제외) - 도서관 ○ 노유자시설 - 어린이집	○ 단독주택 (다중주택제외) ○ 공동주택 (아파트 제외) ○ 제1종근린생활시설 (단, 1층에 한함) ○ 제2종근린생활시설 - 제과점(제1종근린 생활시설에 해당 되지 않은 것) - 서점(제1종근린 생활 시설에 해당 되지 않은 것) - 사진관,표구점,학원, 독서실 - 부동산중개업소 - 일반음식점 (단, 1층에 한함) - 종교집회장 ○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 당하는 것을 제외) - 유치원 - 도서관 ○ 노유자시설 - 어린이집	○ 단독주택(다중주택제 외) ○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 제1종근린생활시설 (단, 1층에 한함) ○ 제2종근린생활시설 - 제과점(제1종근린 생활 시설에 해당 되지 않은 것) - 서점(제1종근린생활 시설에 해당되지 않은 것) - 사진관,표구점,학원, 독서실 - 부동산중개업소 - 일반음식점 (단, 1층에 한함) - 종교집회장 ○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 유치원 - 도서관 ○ 노유자시설 - 어린이집 ○ 문화 및 집회시설 - 전시장(박물관· 미술관·기념관, 12m 이상 도로에 12m접합)	○ G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식품제조업)(단 결식 아동 및 사회복지 사업에 한하며 지하 1층에 한함)
불허 용도	○ 지정용도, 권장용도 이외의 용도 ○ 지하층 주거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건축자재 소매점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의한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되는 지역에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해당되는 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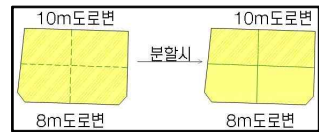
- 주1) 대지분할가능선 획지의 공동주차 통로는 미분할시 차량출입불허구간을 피하여 적정 위치 선정 가능
- 주2)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가구 및 세대당 1대의 주차면수 확보에 한함
- 주3) 단독주택용지 제1종근린생활시설 1층의 높이는 4미터를 초과할 수 없음(단, 경사지붕을 설치할 경우
에는 지붕의 가중평균선을 기준으로 1층의 높이를 산정한다)
- 주4) 지붕의 형태는 경사지붕을 유도하되 다른 형태의 지붕은 허가권자의 결정을 따르도록 함
- 주5) 가설건축물 제한(단, 공사용 가설건축물은 제외)하고, 가로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건축물의 구조는
조립식 경량판넬, 샌드위치 판넬, 무피복철근구조, 컨테이너 구조물을 제한
- 주6) 권장용도(C1,C2,C3)는 도로폭원에 따라 완화하고 있으나 도로모퉁이변(도로폭원이 상이한 부분에
접하는 획지에 대해서는 도로폭원이 큰 것에 접하는 도로변의 용도를 허용
- 주7) 획지분할시 전면이 기준에 접한 도로 폭보다 적은 도로에 접할 경우, 좁은 도로변의 용도 적용

【별표2】 건축물의 형태 분류표(변경없음)

용도	도면 표시	건축물의 형태
공동주택용지(A)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 1동의 전면길이는 건축물의 높이에 반비례되도록 유도하며, 시각적 개방감 부여 및 심리적 중압감 배제 등을 위해 주동의 최대길이는 80m 이내로 제한 ※ 주동길이라 함은 수직면에 수평투영한 길이 중 최대길이를 말함. “ㄱ, ㄴ” 자 형태의 아파트 주동길이는 가장 거리가 먼 외벽 대각선의 길이를 말함 ○ 아파트의 지붕형태는 경사지붕 설치를 권장(구배는 3/10~7/10이 되도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사지붕이라 함은 건축물 지붕면적의 70%이상을 경사지붕으로 설치한 지붕을 말함 - 경사지붕 설치시 옥상의 설비기기 등 경관불량요소는 건축물전면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
근린생활시설용지(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외벽은 골조가 노출되어서는 아니되며 의장, 재료, 색채에 있어 3면 이상의 벽면에서 통일성을 유지하여야 함 ○ 옥상의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상부분의 옥외창고로의 이용 규제 및 물건을 그대로 방치하지 못하게 함 - 부득이 옥상을 야적장으로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지상에서 보이지 않게 하고, 주변 고층건물에서 보이지 않도록 간이지붕 설치 ○ 지하층으로 통하는 출입구와 계단은 건물내부에 설치하도록 권장 ○ 근린생활시설의 1층 셔터는 벽면의 50% 이상을 투시형으로 설치 ○ 벽식 피로티 설치 기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로티 지상층 바닥은 도로면으로 부터 ±15cm 이내로 설치 - 피로티 기둥의 폭은 1m 이내로 할 것 ○ 점암지구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건축물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설건축물(단, 공사용 가설건축물은 제외) - 가로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건축물의 구조는 조립식 경량판넬, 샌드위치판넬, 무피복 철근구조, 컨테이너 구조물을 제한함
단독주택용지(C1, C2, C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붕의 형태는 경사지붕 설치를 유도 (단, 다른형태의 지붕은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사지붕이라함은 건축물 지붕면적의 70% 이상을 경사지붕으로 설치한 지붕을 말함 ○ 경사지붕의 설치시의 구배는 3/10~7/10이 되도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사각을 갖는 외벽의 일부나 지붕의 방향은 주위건물과 일치시킴 ○ 옥상의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상부분의 옥외창고로의 이용 규제 및 물건을 그대로 방치하지 못하게 함 - 부득이 옥상을 야적장으로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지상에서 보이지 않게 하고, 주변 고층 건물에서 보이지 않도록 간이지붕 설치 ○ 건축물의 외벽은 블록별로 유사한 재료 사용(외벽색상은 원색사용을 지양하여 우리동네라는 분위기 창출을 위한 공간형성) ○ 건축물의 외벽은 골조가 노출되어서는 아니되며 의장, 재료, 색채에 있어 3면 이상의 벽면에서 통일성을 유지하여야 함 ○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은 지하층의 주거용도 이용을 금지토록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 유도 ○ 벽식 피로티 설치 기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로티 지상층 바닥은 도로면으로 부터 ±15cm 이내로 설치 - 피로티 기둥의 폭은 1m 이내로 할 것 ○ 단독주택용지 제1종근린생활시설 1층의 높이는 4.0m로 제한 ○ 점암지구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건축물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설건축물(단, 공사용 가설건축물은 제외) - 가로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건축물의 구조는 조립식 경량판넬, 샌드위치판넬, 무피복철근구조, 컨테이너 구조물을 제한함

【별표3】 건축물의 배치 분류표(변경없음)

용도	도면표시	건축물의 배치
공동주택용지(A)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의 전면길이는 일조 및 조망을 고려하여 조정배치하고, 변화있는 층수배치로 경관 및 식별성이 제고되도록 함 ○ 주민의 프라이버시 침해나 밀폐감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된 건물의 향과 직각 또는 변화 있는 방향이 되도록 유도 ○ 중로 2-169호선변에 접한 필지에 대하여 건축한계선 2m를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되는 전면공지는 일반인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보도의 높이와 함께 조성하고 주차장, 담장, 환기구, 쓰레기적치장 등 보행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을 설치하여서는 안되며 바닥포장은 인접도로의 포장, 재료, 형태, 색채와 조화되도록 함 ○ 담장 설치 : 도로에 면한 단지 경계부에 단지의 관리와 안전을 위해 담장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에 면한 담장 : 투시형이나 생울타리 담장(높이 1.2m 이하) 설치를 권장 - 공원 및 녹지시설에 면한 담장 : 생울타리담장(높이 1m이하) 설치 - 동일 블록내 담장은 유사한 색상과 재료사용, 통일화된 형태로 블록별 일체감 부여 ○ 담장설치불허구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으로 연결되는 교차지점(담장을 없애고 같은 동네로서의 공간형성) - 건축한계선 지정 구역(담장 설치를 불허하여 일반인의 활용 유도) ○ 같은 단지내에 있는 모든 공동주택단지의 외곽도로에 면한 담장은 재료와 형태를 가급적 한가지로 통일토록 권장
근린생활시설용지(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계가 높은 도로에 면하여 건축물 전면을 향하도록 함 ○ 중로 2-169호선, 중로 2-171호선, 중로 2-172호선, 중로 3-145호선변에 접한 필지에 대하여 건축한계선 2m를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되는 전면공지는 일반인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보도의 높이와 함께 조성하고 주차장, 담장, 환기구, 쓰레기적치장 등 보행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을 설치하여서는 안되며 바닥포장은 인접도로의 포장, 재료, 형태, 색채와 조화되도록 함 ○ 담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높이 0.6m이하의 식수대, 높이 1.0m이하의 투시형담장 또는 생울타리담장으로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선가로변 도로에 접한 건축물은 이들 도로에 면한 1층에 서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 서터를 사용하여야 함. 다만, 건축물의 용도상 부득이하다고 건축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건축물은 코아부분의 벽면 또는 개구부가 없는 벽면을 가로에 노출하여서는 안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벽면에 조경, 벽화등 장식처리를 하여 도시미관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단독주택용지(C1, C2, C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로이상 도로변에 접한 획지에 대하여 건축한계선2m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되는 전면공지는 일반인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보도의 높이와 함께 조성하고 주차장, 담장, 환기구, 쓰레기적치장 등 보행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을 설치하여서는 안되며 바닥포장은 인접도로의 포장, 재료, 형태, 색채와 조화되도록 함 ○ 담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높이 1.2m이하의 투시형담장 또는 1m이하의 생울타리 담장으로 설치 ○ 폭 12m이상의 가로에 면한 건축물은 코아부분의 벽면 또는 개구부가 없는 벽면을 가로에 노출하여서는 안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벽면에 조경, 벽화등 장식처리를 하여 도시미관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결정에 따르도록 함 ○ 획지분할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면이 8m 도로에 접할 때 건축물용도 제한 C1적용 - 전면이 10m도로에 접할 때 건축물용도 제한 C2적용 - 전면이 12m도로에 접할 때 건축물용도 제한 C3적용 ○ 권장용도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 모퉁이변(도로폭원이 상이한 부분)에 접한 획지에 대한 기준은 도로폭원이 큰 것에 접하는 도로변의 용도를 허용



【별표4】 건축물의 색채 분류표(변경없음)

용도	도면 표시	건축물의 색채
공동주택 용지 (A)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암1구역 북측 및 서측은 Landmark 기능 및 단지내 쾌적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밝고 명량한 색조계열 사용 ○ 인천시의 시색인 청색을 자연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채도 및 명도를 낮추어 주조색으로 사용토록 권장 ○ 주변은 안정된 주거환경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침착한 색조계열 사용
근린생활 시설용지 (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활동축으로서 밝고 명량한 색조계열을 사용하며 원색의 사용을 금함 (단, 강조색은 가능) ○ 건축물의 전면색채는 동일용도의 인접건축물과는 동일계통의 색채를 사용하여 식별성 강화
단독주택 용지 (C1,C2,C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색의 사용을 금하며(강조색은 가능) 저채도 색채를 사용 ○ 건축물의 좌우배면은 전면색채와 동일계통의 색채를 사용 ○ 검정색 계통의 벽돌사용을 지양하여 밝고 명량한 분위기의 도시경관 형성

■ 색채계획목표

- 색채계획은 도시경관에 영향을 주는 주요요소로서 주민들에게 심미감과 쾌적한 도시 환경을 느끼도록 하는 요소임
 -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경관의 형성을 위한 색채 사용
 - 인천시를 상징할 수 있는 색채감의 조성
 - 구역내의 변화로운 색채 형성으로 식별성 및 미관의 개선
 - 대상주민 뿐만 아니라 도로를 통해 보여지는 가로경관의 시각효과 개선

■ 색채의 분류

- 자율적인 색채계획을 최대한 보장하되 색채사용의 범위를 명시하여 색채적용의 융통성을 부여토록 함
- 색채의 분류는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등 3가지로 분류하며, 이들 색채의 적절한 사용을 통하여 다양하면서도 통일감 있는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함
 - 주조색 : 대상지내 건축물의 도로변에 접하는 가장 잘보이는 면에 배색되어 시각적 인상을 결정하는 색으로서 외벽면적의 70%이상을 차지
 - 보조색 : 주조색보다는 좁은 면적에 배색되어 주조색과 조화를 이루면서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어 전체적인 변화를 주는 색으로서 외벽면적의 10~30%를 차지
 - 강조색 : 건축물의 선이나 점같이 매우 좁은 면의 특히 강조할 곳에 배색되어 주조색이나 보조색과 강한 대비를 이루면서 전체에 활력을 주고 변화를 주는 색이며 외벽면적의 10%미만을 차지

【별표5】 차량동선.주차시설.단지내시설물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기 타 사 항

■ 차량동선 및 주차에 관한 계획

- 차량동선에 관한 계획
 - 간선 및 집산도로에서의 차량진출입을 가능한 배제하여 원활한 교통흐름 유도
 - ① 차량출입불허구간
 - 중로 2-169호선변의 주차통로를 제외한 구간
 - 공동주택(아파트) 용지는 교차로 측단으로 부터 30m이내의 구간
 - 근린생활시설용지는 교차로 측단으로 부터 10m이내 구간
 -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육교 등에서 10m 이내 구간
 - ② 공동주차통로
 - 간선도로 및 집산도로에서의 진출입을 가능한 억제하되 불가피할 경우 획지1개소당 1개소의 주차통로 설치를 유도하며 1개소당 통로폭은 최소3m이상 확보 (단, 획지의 분할 및 합병시 차량출입 불허구간을 피하여 적정위치선정)
- 주차에 관한 계획
 - 공동주차장 설치 및 공동진출입 유도
 - 법정규모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주거용 건축물은 세대당 1대이상의 주차면수 확보 유도
 - 근린생활 용지 내 다가구주택은 1가구당,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1세대당 1대의 주차면수 권장

■ 단지내 시설물 배치계획

- 기본방향
 - 보행활동 중 시설물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사용중 위험 발생의 가능성을 최소화
 - 가로시설물의 형태, 크기, 배치, 구조 및 재료는 주위환경과 어울리도록 설치
 - 보행인이나 교통흐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계획하고, 특히 지체부자유자를 위한 편익 시설 설치
 - 대중 인식이 높은 옥외시설물 또는 안내판 등의 시설물은 지역적 특성을 살린 디자인을 도입하여 설치

【별표6】 도시계획도로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용도	도면표시	도시계획도로	
도시 계획 도로	-	가로 시설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꼭 필요한 곳에만 적절한 수량으로 설치토록 유도 ○ 상호보완적 가로시설물을 집합시켜 복합적 기능을 갖도록 설치 ○ 시설간에 통일성 있고 시각적으로 아름답게 하여 가로를 장식할 수 있도록 설치
		식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특성 및 계절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수종을 선택하여 지역별, 가로망별로 특징적 경관을 연출하도록 식재 ○ 인천시의 시목인 목백합 또는 서구의 구목인 은행나무 등의 식재 유도 ○ 가로수는 차도로부터 0.5m, 건물외벽으로부터 2~3m 이상 떨어져 식재하며, 식재간격은 6~8m을 기준으로 함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변화가 적고 보수가 용이하며 차량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내구성 재료의 사용 -재료는 아스팔트 및 유색아스팔트 사용 ○ 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행의 지루함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패턴 -포장구획을 소단위로하여 친근감 유지 -재료는 소형고압블럭 및 일반콘크리트블럭 등의 재료 사용 유도 ○ 연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횡단로 등에서는 경사면으로 처리 -재료는 화강석(인조화강석)등 차량에 의해 파손되지 않는 재료 사용
		조명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의 교통량, 도로폭, 바닥포장의 재질, 건축물의 재질(반사정도) 등을 고려하여 높이, 위치, 밝기 등을 조절 -조명등의 설치타입은 주변여건에 적합되도록 선택 ○ 보행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속적으로 일정한 조도를 유지하도록 하며, 가급적 보도폭 전체로 빛이 닿도록 계획
		기 타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교, 계단, 경사로의 설치 및 조명시설, 옥외가로시설물 등 본 계획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반관련규정의 기준을 준용토록 함(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도로구조령의 도로조명 시설기준, 옥외광고물법, 「인천광역시 상징물관리 조례」 등)

【별표7】 옥외광고물 설치기준(변경없음)

- 옥외가로시설물의 형태 및 색채 등 본 계획에서 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상징물 관리 조례」를 준용토록 함
 - 가로시설물, 안내판, 옥외광고물, 표지판 등의 도시개성과 관련한 일체화된 디자인 계획

【별표8】 기타사항(변경없음)

-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등 과업추진 과정에서 협의 완료, 승인된 내용 중 본 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수용하여야 하며, 본 계획에 별도로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기존의 법규나 인천광역시 조례 및 서구 관련조례를 준용함
- 본 지구단위계획의 일부 규제내용이 기존의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법령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에는 이들 중 그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준용함

4. 지형도면: 게재 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21-1564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2-939호선, 소로1-312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 열람·공고

인천광역시고시 제2020-460(2020.12.21.)로 도시관리계획 결정한 도시계획 시설【도로명: 중로2-939호선, 소로1-312호선, 사업명: 인천 대곡동~불로지구 연결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미리 주민(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서구청(도시계획과 ☎560-4763)에 갖추어 두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리니 의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9. 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불로동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2-939호선, 소로1-312호선)
- 명칭 : 인천 대곡동~불로지구 연결도로

3. 면적 또는 규모(변경)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비고
당초	도로	중로	2	939	15.5 (15.5~60.0)	950	42,145	토지이동 (분할)에 따른 토지조서 변경
변경	도로	중로	2	939	15.5 (15.5~60.0)	950	42,205	
당초	도로	소로	1	312	11 (11.0~22.0)	95	1,470	
변경	도로	소로	1	312	11 (11.0~22.0)	95	1,508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인천도시공사 사장 이승우
-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 42 (만수동)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인가일 ~ 2023.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 따로 붙임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8.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의견제출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 장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9. 열람 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도시계획과, 032-560-4763, 서구 심곡로 307)

10. 관계도서: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사업명 : 인천 대곡동~블로지구 연결도로
(인천광역시 서구)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소유자		소유권외의 권리			비고
					대장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및내용	
1	당초	대곡동	687	천	31,810	387	국토교통부	국				
1	변경	"	687-18	천	373	373	국토교통부	국				
2	당초	"	373-5	답	1,635	5	인천광역시	공				
2	변경	"	373-16	답	1	1	인천광역시	공				
3	당초	블로동	54-8	답	2,203	815	인천광역시	공				
3	변경	"	54-20	답	822	822	인천광역시	공				
4	당초	"	54	답	378	29	대전광역시 유성구 상대로 ****	김*자				
4	변경	"	54-11	답	28	28	대전광역시 유성구 상대로 ****	김*자				
5	당초	"	54-1	답	2,356	1,050	서울시 도봉구 수유동 ****	문*자				
5	변경	"	54-12	답	1,053	1,053	서울시 도봉구 수유동 ****	문*자				
6	당초	"	54-2	답	3,801	1,736	인천광역시 서구 가현로 ****	한*희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 ****	한*문				
6	변경	"	54-13	전	1,748	1,748	인천광역시 서구 가현로 ****	한*희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 ****	한*문				
7	당초	"	54-3	전	3,023	1,182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	문*일	인천시 서구 검단로 497 (마전동)	검단농업 협동조합	근저당권, 지상권	
7	변경	"	54-14	전	1,186	1,186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 42	인천 도시공사				
8	당초	"	54-4	전	5,044	1,801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	문*갑	인천시 서구 검단로 497 (마전동)	검단농업 협동조합	근저당권	
8	변경	"	54-15	전	1,804	1,804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	문*갑	인천시 서구 검단로 497 (마전동)	검단농업 협동조합	근저당권	
9	당초	"	54-5	답	2,534	828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 ****	김*중	인천시 서구 청라에 메탈드로102번길 12 (연희동, 서인천농협)	서인천 농협협동 조합	근저당권	
9	변경	"	54-16	전	832	832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 ****	김*중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위의 권리			비고
					대장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및내용	
10	당초	불로동	54-6	답	2,926	874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	배*순				
10	변경	"	54-17	답	873	873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	배*순				
11	당초	"	54-7	답	2,659	734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	김*환				
11	변경	"	54-18	답	740	740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 42	인천 도시공사				
12	당초	"	57	답	2,303	624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	김*환				
12	변경	"	57-5	답	615	615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 42	인천 도시공사				
13	당초	"	520-4	구	1,545	1,090	농림축산식품부	국				
13	변경	"	520-16	구	1,246	1,246	농림축산식품부	국				
14	당초	"	57-1	답	1,812	448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	고*희				
14	변경	"	57-6	답	442	442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	고*희				
15	당초	"	57-2	전	2,932	715	인천광역시 서구 가현로 ****	이*복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	주*희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 ****	이*봉				
							인천광역시 서구 청마로 *****	이*영				
15	변경	"	57-7	전	714	714	인천광역시 서구 가현로 ****	이*복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	주*희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 ****	이*봉				
							인천광역시 서구 청마로 *****	이*영				
16	당초	"	57-3	답	1,241	430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	장*심				
16	변경	"	57-8	전	433	433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	장*심				
17	당초	"	57-4	답	1,653	780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 ****	이*용	인천시 서구 검단로 497 (마전동)	검단농업 협동조합	근저당권	
17	변경	"	57-9	답	773	773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 ****	이*용	인천시 서구 검단로 497 (마전동)	검단농업 협동조합	근저당권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외의 권리			비고
					대장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및내용	
18	당초	불로동	520-5	구	3,766	142	농림축산식품부	국				
18	변경	"	520-17	구	76	76	농림축산식품부	국				
19			520-18	구	61	61	농림축산식품부	국				
20			520-19	구	43	43	농림축산식품부	국				
21	당초	"	48-6	과	2,819	952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	박*수				
21	변경	"	48-15	과	935	935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 42	인천 도시공사				
22	당초	"	48-3	과	2,645	879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	박*락				
22	변경	"	48-12	과	878	878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 42	인천 도시공사				
23	당초	"	48-2	대	658	559	인천시 서구 마전동 ****	이*호				
23	변경	"	48-10	대	557	557	인천시 서구 마전동 ****	이*호				
24	당초	"	48-1	창	658	570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	황*진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	허*숙				
24	변경	"	48-9	창	568	568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	황*진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	허*숙				
25	당초	"	413-2	도	33	23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	김*식				
25	변경	"	413-2	도	33	33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 42	인천 도시공사				
26	당초	"	736-14	도	64	45	국토교통부	국				
26	변경	"	736-14	도	64	64	국토교통부	국				
27	당초	"	414-3	도	144	140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	김*식				
27	변경	"	414-3	도	144	144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 42	인천 도시공사				
28	당초	"	414-5	도	99	89	김포군 검단면 불로리 ****	김*중				
28	변경	"	414-9	도	83	83	김포군 검단면 불로리 ****	김*중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소유자		소유권외의 권리			비고
					대장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및내용	
29	당초	불로동	61	답	3,616	1,174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 ****	김*호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569-6	고촌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인천시 부평구 갈산동 ****	김*호	서울시 중구 충정로 1가 75 (계산지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근저당권	
							인천시 서구 마전동 ****	김*호	서울시 서대문구 모래내로 ****	이*호	근저당권	
							인천시 중구 향동 ****	김*호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	김*선				
							서울시 강서구 염창동 ****	김*호				
							경기도 김포시 고촌면 ****	김*호				
							인천시 서구 검단로 ****	김*호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천천로 ****	장*자				
							경기도 김포시 검단면 ****	김*호				
							서울시 양천구 목동 ****	김*호				
							인천시 부평구 일신로 ****	김*례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	김*의				
							경기도 부천시 삼작로 ****	김*윤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	김*금											
29	변경	-	61-11	답	1,172	1,172	경기도 김포시 고촌면 ****	김*호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569-6	고촌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인천시 서구 검단로 ****	김*호	서울시 서대문구 모래내로 ****	이*호	근저당권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	김*호				
							인천시 남구 주안동 ****	김*호				
							인천시 중구 향동 ****	김*호				
							서울시 양천구 목동 ****	김*호				
							인천시 서구 검단로 ****	김*호				
							인천시 부평구 갈산동 ****	김*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인천 도시공사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외의 권리			비고
					대장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및내용	
30	당초	불로동	61-1	답	2,158	695	인천시 계양구 계산로 ****	김*국				
30	변경	"	61-13	답	693	693	인천시 계양구 계산로 ****	김*국				
31	당초	"	61-2	답	1,538	486	인천시 서구 불로동 ****	문*중				
31	변경	"	61-15	답	483	483	인천시 서구 불로동 ****	문*중				
32	당초	"	61-7	답	1,141	345	인천시 서구 불로동 ****	문*중				
32	변경	"	61-19	답	347	347	인천시 서구 불로동 ****	문*중				
33	당초	"	61-4	대	658	523	인천시 서구 불로동 ****	문*중	인천시 서구 검단로 497 (마전동)	검단농업 협동조합	근저당권	
33	변경	"	61-16	대	519	519	인천시 서구 불로동 ****	문*중	인천시 서구 검단로 497 (마전동)	검단농업 협동조합	근저당권	
34	당초	"	409	전	1,311	440	서울시 금천구 독산로 ****	김*숙				
34	변경	"	409-11	전	430	430	서울시 금천구 독산로 ****	김*숙				
35	당초	"	570-12	구	1,106	382	농림축산식품부	국				
35	변경	"	570-32	구	248	248	농림축산식품부	국				
36			570-33	구	4	4	농림축산식품부	국				
37	당초	"	409-1	전	2,029	741	서울시 금천구 독산로 ****	김*숙				
37	변경	"	409-13	전	728	728	서울시 금천구 독산로 ****	김*숙				
38			409-14	전	1	1	서울시 금천구 독산로 ****	김*숙				
39	당초	"	570-11	구	167	1	농림축산식품부	국				
39	변경	"	570-29	구	1	1	농림축산식품부	국				
40	당초	"	409-4	도	1,342	529	인천광역시	공				
40	변경	"	409-17	도	560	560	인천광역시	공				
41	당초	"	520-8	도	130	74	농림축산식품부	국				
41	변경	"	520-20	도	71	71	농림축산식품부	국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소유자		소유권외의 권리			비고
					대장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및내용	
42	당초	불로동	52-5	답	2,466	95	인천광역시	공				
42	변경	"	52-17	답	93	93	인천광역시	공				
43	당초	"	520-9	구	272	99	농림축산식품부	국				
43	변경	"	520-22	구	38	38	농림축산식품부	국				
44			520-23	구	62	62	농림축산식품부	국				
45	당초	"	52-3	전	497	62	인천광역시	공				
45	변경	"	52-16	전	59	59	인천광역시	공				
46	당초	"	52-6	답	2,016	131	인천광역시	공				
46	변경	"	52-18	답	128	128	인천광역시	공				
47	당초	"	52-2	답	1,779	203	인천시 계양구 서운동 ****	김*영				
47	변경	"	52-14	답	143	143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 42	인천 도시공사				
48			52-15	답	59	59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 42	인천 도시공사				
49	당초	"	52-1	답	3,037	401	전남 영광군 홍농읍 ****	황*미				
49	변경	"	52-11	답	175	175	전남 영광군 홍농읍 ****	황*미				
50			52-12	답	288	288	전남 영광군 홍농읍 ****	황*미				
51	당초	"	52	답	975	153	인천시 계양구 계산새로 ****	최*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206	계양 새마을금고	근저당권	
51	변경	"	52-8	답	151	151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 42	인천 도시공사				
52	당초	"	51-4	답	1,967	320	인천시 계양구 주부도로 ****	이*례	인천시 부평구 길주 로 597 (갈산동)	부평농업 협동조합	근저당권	
52	변경	"	51-10	답	321	321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 42	인천 도시공사				
53	당초	"	51-5	답	640	113	서울시 은평구 갈현로 ****	박*배	인천시 서구 검단로 497 (마전동)	검단농업 협동조합	근저당권	
53	변경	"	51-11	답	113	113	서울시 은평구 갈현로 ****	박*배	인천시 서구 검단로 497 (마전동)	검단농업 협동조합	근저당권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외의 권리			비고
					대장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및내용	
54	당초	불로동	51-3	답	1,328	241	서울시 은평구 갈현로 ****	박*배	인천시 서구 검단로 497 (마전동)	검단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54	변경	"	51-9	답	243	243	서울시 은평구 갈현로 ****	박*배	인천시 서구 검단로 497 (마전동)	검단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55	당초	"	51-2	답	2,916	580	서울시 은평구 갈현로 ****	박*배	인천시 서구 검단로 497 (마전동)	검단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55	변경	"	51-8	답	582	582	서울시 은평구 갈현로 ****	박*배	인천시 서구 검단로 497 (마전동)	검단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56	당초	"	51-1	답	1,014	218	인천시 계양구 장제로 ****	김*술				
56	변경	"	51-7	답	219	219	인천시 계양구 장제로 ****	김*술				
57	당초	"	51	답	4,003	928	인천시 부평구 경인로 ****	조*인				
57	변경	"	51-6	답	925	925	인천시 부평구 경인로 ****	조*인				
58	당초	"	520-3	도	1,830	1,770	농림축산식품부	국				
58	변경	"	520-15	도	1,770	1,770	농림축산식품부	국				
59	당초	"	50-3	답	4,007	1,071	인천시 계양구 장제로 ****	윤*				
59	변경	"	50-8	답	1,061	1,061	인천시 계양구 장제로 ****	윤*				
60	당초	"	50-2	답	3,960	1,144	인천시 남동구 백범로 ****	이*천				
60	변경	"	50-7	답	1,147	1,147	인천시 남동구 백범로 ****	이*천				
61	당초	"	50-1	답	5,567	1,733	인천시 서구 불로동 ****	김*영				
61	변경	"	50-6	답	1,737	1,737	인천시 서구 불로동 ****	김*영				
62	당초	"	50	과	3,307	1,116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	김*환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서암로 79	신김포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62	변경	"	50-5	과	1,120	1,120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	김*환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서암로 79	신김포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63	당초	"	50-4	과	3,307	1,137	경기도 김포시 감정동 ****	김*갑	경기도 김포시 북변동 301-2	김포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지상권	
63	변경	"	50-9	과	1,141	1,141	경기도 김포시 감정동 ****	김*갑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소유자		소유권외의 권리			비고
					대장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및내용	
64	당초	불로동	48-7	전	1,495	162	인천시 서구 마전동 ****	이*호				
64	변경	"	48-17	전	163	163	인천시 서구 마전동 ****	이*호				
65	당초	"	48-8	답	2,602	730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	황*진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	허*숙				
65	변경	"	48-19	답	727	727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	황*진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	허*숙				
66	당초	"	48-5	전	3,915	2,333	경기도 김포시 검단면 ****	김*중				
66	변경	"	48-14	전	2,286	2,286	경기도 김포시 검단면 ****	김*중				
67	-	"	48	대	658	21	경기도 김포시 검단면 ****	김*중				
68	-	"	415-5	답	192	192	기획재정부	국				
69	당초	"	415-4	도	132	119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	김*식				
69	변경	"	415-24	도	84	84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 42	인천 도시공사				
70	당초	"	736-6	도	149	8	국토교통부	국				
70	변경	"	736-28	도	20	20	국토교통부	국				
71	당초	"	415-6	도	579	510	인천광역시 서구	공				
71	변경	"	415-25	도	609	609	인천광역시 서구	공				
72	-	"	415-22	도	192	192	경기도 김포시 검단면 ****	이*중				
73	당초	"	415-20	도	123	32	인천광역시	공				
73	변경	"	415-26	도	27	27	인천광역시	공				
74	당초	"	59	답	4,110	2,118	인천시 서구 가현로****	이*자				
74	변경	"	59-4	답	1	1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 42	인천 도시공사				
75			59-5	답	2,120	2,120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 42	인천 도시공사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소유자		소유권외의 권리			비고
					대장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및내용	
76	당초	불로동	59-1	답	1,533	767	인천시 연수구 민우금로 *****	김*호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569-6	고촌농업 협동조합	근저당권	
							인천시 서구 마전동 ****	김*호	서울시 중구 충정로 1 가 75 (계산지점)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근저당권	
							인천시 부평구 갈산동 ****	김*호	서울시 서대문구 모래내로 ****	이*호	근저당권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	김*순				
							서울시 강서구 염창동 ****	김*호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	김*호				
							인천시 서구 검단로 ****	김*호				
							인천시 서구 불로동 ****	김*호				
							경기도 김포시 유현로 ****	류*남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	장*자				
76	변경	“	59-7	답	771	771	인천시 연수구 민우금로 *****	김*호	경기도 김포시 고촌 읍 신곡리 569-6	고촌농업 협동조합	근저당권	
							인천시 부평구 갈산동 ****	김*호	서울시 서대문구 모래내로 ****	이*호	근저당권	
							서울시 강서구 염창동 ****	김*호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	김*호				
							인천시 서구 검단로 ****	김*호				
							인천시 서구 불로동 ****	김*호				
							경기도 김포시 유현로 ****	류*남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인천 도시공사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소유자		소유권외의 권리			비고
					대장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및내용	
77	당초	불로동	59-2	답	2,346	1,134	인천 연수구 먼우금로 ****	김*호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569-6	고촌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인천시 부평구 갈산동 ****	김*호	서울시 중구 충정로 1가 75 (계산지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근저당권	
							인천시 서구 마전동 ****	김*호	서울시 서대문구 모래내로 ****	이*호	근저당권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	김*선				
							서울시 강서구 염창동 ****	김*호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	김*호				
							인천시 서구 검단로 ****	김*호				
							서울시 양천구 목동 ****	김*호				
							김포군 검단면 불로리 ****	김*호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자				
							인천시 부평구 일신로****	김*례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김*의				
							경기도 부천시 삼작로****	김*운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	김*금											
77	변경	“	59-9	답	1,126	1,126	인천시 연수구 먼우금로 *****	김*호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569-6	고촌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인천시 부평구 갈산동 ****	김*호	서울시 서대문구 모래내로 ****	이*호	근저당권	
							서울시 강서구 염창동 ****	김*호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	김*호				
							인천시 서구 검단로 ****	김*호				
							인천시 서구 불로동 ****	김*호				
							경기도 김포시 유현로 ****	류*남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인천 도시공사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외의 권리			비고
					대장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및내용	
78	당초	블로동	570-2	구	419	156	농림축산식품부	국				
78	변경	"	570-28	구	155	155	농림축산식품부	국				
79	당초	"	61-8	답	1,694	808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	문*식	인천광역시 서구 검 단로 497 (마전동)	검단농업 협동조합	근저당권	
79	변경	"	61-21	전	811	811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	문*식	인천광역시 서구 검 단로 497 (마전동)	검단농업 협동조합	근저당권	
80	당초	"	61-5	답	1,116	391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	문*중	인천광역시 서구 검 단로 497 (마전동)	검단농업 협동조합	근저당권	
80	변경	"	61-17	답	393	393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	문*중	인천광역시 서구 검 단로 497 (마전동)	검단농업 협동조합	근저당권	
81	당초	"	568-13	구	390	26	농림축산식품부	국				
81	변경	"	568-17	구	26	26	농림축산식품부	국				
82	당초	"	486-13	도	2,285	4	인천광역시	공				
82	변경	"	486-17	도	4	4	인천광역시	공				
83	당초	"	415-19	도	69	64	경기도 김포시 검단면 ****	이*중				
83	변경	"	419-19	도	69	69	경기도 김포시 검단면 ****	이*중				
84	당초	"	414-2	도	16	15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	김*식				
84	변경	"	414-2	도	16	16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 42	인천 도시공사				
85	당초	"	414-1	전	3	1	인천광역시 서구 블로로 ****	김*구				
85	변경	"	414-1	전	3	3	인천광역시 서구 블로로 ****	김*구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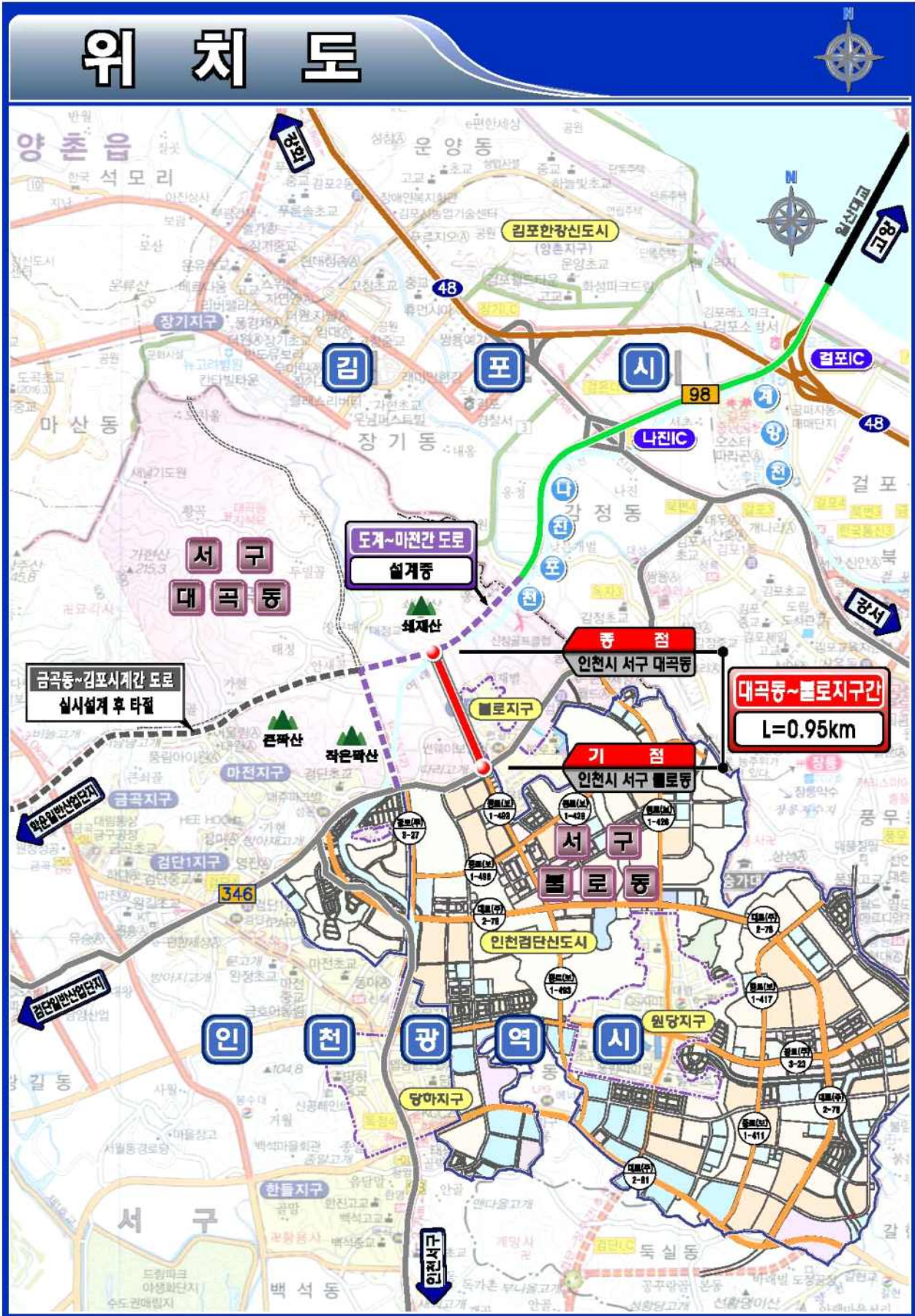
□ 사업명 : 인천 대곡동~블로지구 연결도로
(인천광역시 서구)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기정	블로동	54-4	비닐하우스 (3동)	철파이프/루핑	536㎡		문*갑	인천광역시 서구 블로동 ****			
				물탱크		1식						
				포도나무		220주						
1	변경	"	54-15	비닐하우스 (3동)	철파이프/루핑	536㎡		문*갑	인천광역시 서구 블로동 ****			
				물탱크		1식						
				포도나무		220주						
2	기정	"	57-2	비닐하우스	철파이프/비닐	339㎡		이*복	인천광역시 서구 가현로 ****			
				유실수		12주						
2	변경	"	57-7	비닐하우스	철파이프/비닐	339㎡		이*복	인천광역시 서구 가현로 ****			
				유실수		12주						
3	기정	"	48-6	비닐하우스	철파이프/루핑	174㎡		박*수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			
				비닐하우스	철파이프/비닐	35㎡						
				간이화장실		1식						
				포도나무		325주						
3	변경	"	48-15	비닐하우스	철파이프/루핑	174㎡		박*수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			
				비닐하우스	철파이프/비닐	35㎡						
				간이화장실		1식						
				포도나무		325주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4	기정	블로동	48-2	가옥	조적조/기와	164㎡		이*봉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 ****			
				컨테이너		19㎡						
				울타리		105m						
				관정		1식						
4	변경	"	48-10	가옥	조적조/기와	164㎡		이*봉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 ****			
				컨테이너		19㎡						
				울타리		105m						
				관정		1식						
5	기정	"	48-1	창고	철골/합석	102㎡		황*진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			
				웬스		104m						
5	변경	"	48-9	창고	철골/합석	102㎡		황*진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			
				웬스		104m						
6	기정	"	48-8	관상수		75주		황*진	인천광역시 강화군 ****			
6	변경	"	48-19	관상수		75주		황*진	인천광역시 강화군 ****			
7	기정	"	48-5	비닐하우스	철파이프/루핑	113㎡		김*중	경기도 김포시 검단면 ****			
				비닐하우스	철파이프/비닐	106㎡						
				컨테이너		19㎡						
				가건물	철파이프/천막	121㎡						
7	변경	"	48-14	비닐하우스	철파이프/루핑	113㎡		김*중	경기도 김포시 검단면 ****			
				비닐하우스	철파이프/비닐	106㎡						
				컨테이너		19㎡						
				가건물	철파이프/천막	121㎡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8	-	블로동	48	관상수		17주		김*중	경기도 김포시 검단면 ****			
				웬스		25m						
9	기정	"	61-8	비닐하우스 (2동)	철파이프/비닐	331㎡		문*식	인천광역시 서구 블로동 ****			
				관정		1식						
9	변경	"	61-21	비닐하우스 (2동)	철파이프/비닐	331㎡		문*식	인천광역시 서구 블로동 ****			
				관정		1식						
10	기정	"	61-4	가옥(2F)	조적조/형글	338㎡		문*중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			
				울타리		606m						
				관상수		30주						
10	변경	"	61-16	가옥(2F)	조적조/형글	338㎡		문*중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			
				울타리		606m						
				관상수		30주						
11	기정	"	409	비닐하우스	철파이프	56㎡		김*숙	서울 금천구 독산동 ****			
11	변경	"	409-11	비닐하우스	철파이프	56㎡		김*숙	서울 금천구 독산동 ****			
12	기정	"	409-1	비닐하우스 (2동)	철파이프/비닐	367㎡		김*숙	서울 금천구 독산동 ****			
12	변경	"	409-13	비닐하우스 (2동)	철파이프/비닐	367㎡		김*숙	서울 금천구 독산동 ****			

위 치 도



사 업 계 획 서

사업계획서

1. 사업의 종류와 명칭 (변경없음)

-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 사업의 명칭 : 인천 대곡동~블로지구 연결도로

2.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 ▣ 인천검단 택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해당지역 간선시설의 확충, 경제적이고 안전한 도로개설을 통한 이용자 교통편의 및 이동성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3. 변경 사유

- ▣ 토지이동(분할)에 따른 토지조서 변경

4. 사업의 범위 (변경없음)

▣ 중로 2-939

- 사업 구간
시 점 :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409-4
종 점 :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373-5
- 연 장 : L=950m(교량 63m)
- 폭 원 : B=15.5~60.0m(4차로 신설)
- 교량 1개소, 평면교차로 3개소

▣ 소로 1-312

- 사업 구간
시 점 :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414-3
종 점 :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415-6
- 연 장 : L=95m
- 폭 원 : B=11.0m~22.0m(2차로 신설)
- 평면교차로 1개소

5.2 도시관리계획의 내용 (변경없음)

1) 도시계획시설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2	939	15.5 (15.5~60.0)	보조 간선도로	950	대로3-58	광로3-24	일반 도로	인고제2019-97호 (2019.5.7)	
변경 (시행)	중로	2	939	15.5 (15.5~60.0)	보조 간선도로	950	대로3-58	광로3-24	일반 도로		
기정	소로	1	312	11 (11~22)	집산도로	95	중로3-90	불로동 415-6	일반 도로	인고제2019-97호 (2019.5.7)	
변경 (시행)	소로	1	312	11 (11~22)	집산도로	95	중로3-90	불로동 415-6	일반 도로		

6.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명칭 (변경없음)

-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 42 (만수동)
- ▣ 성 명 : 인천도시공사

7.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변경없음)

- ▣ 사업착수일 : 실시계획인가일
- ▣ 준공예정일 : 2020.10. ~ 2023.12.

8. 사업의 범위 (변경없음)

- ▣ 도로의 구분 및 등급 : 도시지역 보조간선도로 (도시계획도로)

구 분	도로의구분	시설규모	설 계 속 도	비 고
대곡동~불로지구 연결도로	보조간선도로	L = 950m , B = 15.5~60.0m	60km/h	4차로
	집산도로	L = 95m , B = 11~22m	60km/h	2차로

9. 추진현황

- 2017.12. : 기본 및 실시설계착수(12.1.)
- 2018. 4. : 노선관련 관계기관 협의(인천시 외 8개 기관)
- 2018. 9. :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안) 제출(→市 시설계획과)
- 2019. 5.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5/7)
- 2019. 6. ~ 12. : 공공디자인 심의, 가로수계획(안) 심의, 설계VE 시행,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협의(↔한강유역환경청)
- 2020. 1. ~ 2. : 설계 타당성 기술심의(1/22), 공공디자인 (추가)심의(2/4)
설계안전성검토 기술심의(2/5)
- 2021. 2.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실시계획 및 사업인정
고시(2/1)

10. 향후 추진현황

- 2021. 8. ~ 10. : 실시계획(변경)인가 결정 및 관계기관(부서) 협의
- 2021. 11. :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2021. 12. : 보상 착수
- 2021. 12. ~ 2023. 12. : 도로공사 시행(24개월)

11. 총사업비 (변경없음)

- ▣ 40,060백만원(인천도시공사 50%, LH공사 50%)

12. 시설물 설치계획 (변경없음)

가. 연 장 : L=0.95km

나. 노선폭 : 4차로 (B=15.5~21.0m)

· 토 공

- 흙깎기 : 15,757 m³

- 흙쌓기 : 130,693 m³

- 외부반입토 : 117,419 m³

- 보강토옹벽 : 471m

· 연약지반공

- 쇠석매트 : 6,512 m³

- PET 매트 : 15,096 m²

- 과재쌓기 : 28,097 m³

· 배수공

- 우수관로 : L=745m, 우수맨홀 22개소

- U형 플룸관 L=1,194m, 농업용수 박스 L=238m

· 오수공

- 오수관로 : L = 672m

· 구조물공

- 나진포천교 : L=63m

- 교면 포장 : 1,075 m²

· 포장공

- 아스콘 포장 : 23,008 m²

- 콘크리트 포장 : 4,746 m²

- 보도 포장 : 1,978 m²

· 기타

- 부대공 1식, 조경공 1식, 전기공 1식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21-1577호

금곡동 중로2-226호선 도로개설공사 수용재결 신청서류 열람 공고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0-107호(2020.6.24.)호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되고,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0-193호(2020.11.13.)호로 실시계획 정정고시 된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2-226호선) 사업 내 편입되어 있는 토지 등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 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토지 등 소유자 및 영업권자는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9. 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 업 명 :金曲동 중로2-226호선 도로개설공사
2.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金曲동 644-3번지 일원
3. 사업 시행자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4. 서류의 종류 및 명칭 : 별첨 「수용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 참조
5.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21. 9. 6. ~ 9. 23. (14일 이상)
6. 열람장소 및 방법 : 서구청 도로과 방문 또는 전화(☎032-560-4522)
7. 열람서류 : 별첨 「수용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 참조
8. 기 타 : 관계서류는 서구청 도로과(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에 비치하고 있으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21-1582호

공유재산 무단점유 원상회복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공유재산법」 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 등을 위반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 제1항에 따라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행위(소유)자 미상 또는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을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5조(서류의 송달)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 9. 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공 고 명: 공유지 무단점유 원상회복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1. 9. 6. ~ 2021. 10. 15.(39일 이상)
3. 공고대상 및 내역:

위 치	대상 또는 종류	수량	대집행 방법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39-14번지	농작물, 비닐, 울타리 등	4,018m ²	자체 집행 (철거)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34-10번지		565m ²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35-3번지		809m ²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109-3번지		2,624m ²	

4. 송달할 서류의 종류: 행정대집행 계고서(별첨)

5. 공고 및 게시장소: 인천광역시 서구청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6. 지시 및 고지사항

가. 공고기간 내에 자진정비(철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기일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구에서 대집행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동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관할법원(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법원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가.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을 갈음합니다.

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과(☎ 032-560-44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대집행 고고서

성명(단체명) : 미 상

소재지 : 가정동 39-14번지 외 3필지

귀하는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39-14번지 외 3필지 인천광역시 서구청 소관 공유지 행정재산 내 불법경작행위 및 불법경작 관련 시설물(농작물, 비닐, 울타리 등)을 설치하였는데,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공유재산을 점유한 행위입니다.

이는 도심 미관 저해, 민원발생 및 공유재산 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1년 10월15일까지** 반드시 불법 농작물 및 불법경작 관련 시설물이 철거될 수 있도록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시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구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위 치	대상 또는 종류	수량	대집행 방법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39-14번지	농작물, 비닐, 울타리 등	4,018㎡	자체 집행 (철거)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34-10번지		565㎡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35-3번지		809㎡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109-3번지		2,624㎡	

2021년 09월 01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 위치도 】

□ 관련지번

연번	지번	지목	면적(m ²)	소유자	비고
1	가정동 39-14	도로	4,018	인천시 서구	
2	가정동 34-10	도로	565	인천시 서구	
3	가정동 35-3	도로	809	인천시 서구	
4	심곡동 109-3	도로	2,624	인천시 서구	



【 현 장 사 진 】



현장사진



현장사진

【 현 장 사 진 】



현장사진



현장사진

【 현 장 사 진 】



현장사진



현장사진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21-1585호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2021. 9. 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에 대한 객관적인 공적 심의 절차 마련을 위한 조문 정비

2. 주요내용

-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에 대한 객관적인 공적 심의 절차 및 포상 규정 마련
 -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상은 재직기간 25년 이상 공무원 중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등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된 사람에게 수여한다.
 -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상 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산업시찰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3.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총무과장)에게 2021. 9. 27.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 ☎ 032-560-3112, FAX 032-560-2710]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안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제안(개정)이유

-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에 대한 객관적인 공적 심의 절차 마련을 위한 조문 정비

2. 주요내용

-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에 대한 객관적인 공적 심의 절차 및 포상 규정 마련
 -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상은 재직기간 25년 이상 공무원 중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등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된 사람에게 수여한다.

(안 제9조의2제1항)

-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상 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산업시찰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안 제9조의2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2022년 본예산 180,000천원 반영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가정보육과 합의

라. 기 타

- 1) 규제심사: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장기근속 모범공무원상) ①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상은 재직기간 25년 이상 공무원 중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등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된 사람에게 수여한다.

②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상 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산업시찰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u>제9조의2(장기근속 모범공무원상) ①</u> <u>장기근속 모범공무원상은 재직기간</u> <u>25년 이상 공무원 중 맡은 바 직무</u> <u>에 충실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u> <u>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등 다른 공무</u> <u>원의 모범이 된 사람에게 수여한다.</u></p> <p><u>②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상 대상자</u> <u>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산업시찰</u> <u>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u></p>

의견제출서

1. 자치법규명	
2.	성명(단체명/대표자)
	주 소
3. 의견	
4. 기타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 | | |
|--------|--|
| 비
고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기재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21-1588호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9. 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 대형폐기물 간편 배출시스템 도입과 관련하여 구 홈페이지 등 전산망을 이용하는 경우 대형폐기물 수수료 감면을 통한 혜택을 제공
- 시민추진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대형폐기물의 배출방법에 구 지정 전산망(앱)을 추가하고 스티커 부착 외 전산망을 통한 인증번호 기재 배출 가능 규정 신설 (안 제7조)
-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의 구 지정 전산망(앱)을 통한 구입 신설 (안 제12조)
-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의 구 지정 전산망을 통한 구입 시 감면규정 신설 (안 제13조)
- 시민추진단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신설 (안 제31조의2)

3.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년 9월 2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라. 제출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자원순환과

- 주 소 : (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심곡동) 서구청 3층

- 전 화 : ☎ (032)560-4931 FAX (032)560-2760

* 의견제출 후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4. 참고자료

가.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나. 의견제출서 1부.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제안이유

- 대형폐기물 간편 배출시스템 도입과 관련하여 구 홈페이지 등 전산망을 이용하는 경우 대형폐기물 수수료 감면을 통한 혜택 제공
- 시민추진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 신설

2. 주요내용

- 가. 대형폐기물의 배출방법에 구 지정 전산망(앱)을 추가하고 스티커 부착 외 전산망을 통한 인증번호 기재 배출 가능 규정 신설 (안 제7조)
- 나.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의 구 지정 전산망(앱)을 통한 구입 신설 (안 제12조)
- 다.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의 구 지정 전산망을 통한 구입 시 감면규정 신설 (안 제13조)
- 라. 시민추진단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신설 (안 제31조의2)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별지 참조”
- 나. 예산조치 :
- 다. 합 의 :
- 라. 기 타 : “해당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대형폐기물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스티커 또는 구 홈페이지 등 전산망 (이하 “구 지정 전산망”이라 한다)을 통한 신고필증을 배출자가 부착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단, 구 지정 전산망을 통한 신고 시에는 인증번호의 기재를 통해서도 신고필증의 부착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소형전자제품 무상수거 품목은 구청장이 설치한 지정수거함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 단서 중 “홈페이지를”을 “지정 전산망을”로 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구 지정 전산망을 통한 신고필증의 구입 시에는 수수료를 1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제2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민추진단”을 “제1항에 따른 시민추진단”으로, “구성하며, 권역별 참여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3명의 공동위원장으로 한다”를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과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시민추진단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두며, 각 분과위원장 및 간사는 분과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⑤ 분과별 분과위원장을 시민추진단의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전반적인 실무를 처리할 총괄간사 1명을 두되, 전체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⑥ 위원장과 간사, 총괄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⑦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시민추진단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29조제2항 중 “권역”을 “분과위원회”로 한다.

제32조의 제목 “(분과위원회)”를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를 “추진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로 한다.

제3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간사 및 총괄간사 총 7명으로 구성하고,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안전으로 회의에 부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한 사전 심의
2. 회의를 소집할 수 없거나 긴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 및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④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 ① 법 제 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해당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p> <p>1.·2. (생략)</p> <p>3. <u>대형폐기물은 폐기물 앞면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스티커를 부착하고 처리업체에 배출일시, 배출장소, 배출품목 등을 신고한 후 배출하거나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지정 전산망을 활용하여 신고한 후 인터넷 배출신고필증을 부착하고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소형전자제품 무상수거 품목은 구청장이 설치한 지정수거함에 배출하여야 한다.</u></p> <p><신설></p> <p>4. ~ 6. (생략)</p>	<p>제7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 ① ----- ----- ----- -----.</p> <p>1.·2. (현행과 같음)</p> <p>3. <u>대형폐기물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스티커 또는 구 홈페이지 등 전산망(이하 “구 지정 전산망”이라 한다)을 통한 신고필증을 배출자가 부착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단, 구 지정 전산망을 통한 신고 시에는 인증번호의 기재를 통해서도 신고필증의 부착으로 같음할 수 있다.</u></p> <p>4. <u>제2조제4호에 따른 폐소형전자제품 무상수거 품목은 구청장이 설치한 지정수거함에 배출하여야 한다.</u></p> <p>5. ~ 7. (현행 제4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p>

② (생 략)

제12조(쓰레기봉투등의 공급 및 판매)

① 일반용봉투, 가정사업계용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이하 이 조에서 “쓰레기봉투등”이라 한다)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봉투판매자에게 일정률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의 경우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구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자지불증개사업자에게 대금결제 수수료를 지급한다.

② ~ ⑤ (생 략)

제13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생 략)

<신 설>

②·③ (생 략)

제27조(시민추진단의 구성) ①·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쓰레기봉투등의 공급 및 판매)

① -----

----- 지정 전산망을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구 지정 전산망을 통한 신고필증의 구입 시에는 수수료를 1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③·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제27조(시민추진단의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민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권역별로 구성하며, 권역별 참여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3명의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1. ~ 3. (생략)

④ 시민추진단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신설>

<신설>

제29조(위원장의 직무) ① (생략)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권역에서 호선된 위원이 전임 위원

③ 제1항에 따른 시민추진단-----
--- 위촉한다.

1. ~ 3. (현행과 같음)

④ 시민추진단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두며, 각 분과위원장 및 간사는 분과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⑤ 분과별 분과위원장을 시민추진단의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전반적인 실무를 처리할 총괄간사 1명을 두되, 전체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⑥ 위원장과 간사, 총괄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시민추진단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29조(위원장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분과위원회-----

장 임기의 남은 기간 동안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2조(분과위원회) ① 시민추진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시민추진단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신 설>

<신 설>

-----.

제32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① ----- 추진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간사 및 총괄간사 총 7명으로 구성하고,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안건으로 회의에 부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한 사전 심의
- 2. 회의를 소집할 수 없거나 긴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항
- 3. 그 밖에 위원장 및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④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